

2008 공통교재

지방세실무



시·도 공무원교육원

지방세 실무

시 · 도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 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지방세의 총론	7
제1절 서 설	7
1. 지방세의 의의	7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8
3. 지방세의 분류	9
4. 지방세의 특성	11
5. 지방세의 관련용어	13
제2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20
1. 지방세의 부과원칙	20
2.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22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확대 · 소멸	25
1. 납세의무의 성립	25
2. 납세의무의 확정	27
3. 납세의무의 확대	28
4. 납세의무의 소멸	40
제4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緩和), 납세보전 및 환급	47
1. 지방세 채권의 확보	47
2. 지방세 채권의 완화(緩和)	63
3. 지방세 납세보전	73
4. 과오납금의 환급	87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91
1.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교부	91
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103
3.	수정신고 납부제도	106
제2장	지방세의 종류	113
1.	취득세	113
2.	등록세	203
3.	면허세	253
4.	레저세	259
5.	공동시설세	260
6.	지역개발세	265
7.	지방교육세	268
8.	주민세	270
9.	재산세	282
10.	자동차세	312
11.	주행세	326
12.	농업소득세	330
13.	담배소비세	330
14.	도축세	333
15.	도시계획세	334
16.	사업소세	336

제3장 과세면제 및 세액경감	343
제1절 의 의	343
1. 비과세	343
2. 면 제	344
3. 면세점	345
4. 소액부징수	345
5.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규정과 조건부 비과세·감면	345
제2절 지방세 감면의 기초	347
1. 비영리사업자와 사용의 범위	347
2. 주된 사업과 감면법인의 판단	349
3. 목적사업과 후생복지사업과의 관계	351
4. 직접 사용	352
5. 감면의 대상범위	353
제3절 지방세법상의 감면 내용	354
1. 농어민 지원	354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364
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374
4.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388
5.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393
6. 중복 감면의 배제	396
7. 감면신청	396

제4장 지방세 채권실행절차(체납처분)	398
제1절 의 의	398
제2절 압류의 내용	399
1. 요 건	399
2. 압류의 제한과 금지	399
제3절 압류의 절차	403
1. 신분증의 제시 등	403
2. 수색의 권한과 방법	403
3. 질문, 검사권	404
4. 출입제한권	404
5. 참여자설정	405
6. 압류조서	405
7.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406
8. 압류금지 재산	406
9.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1조)	407
10.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2조)	408
제4절 압류 물건별 처리방법	411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11
2. 부동산 등의 압류	412
3. 채권의 압류	414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15
5. 압류의 효력	415

6. 교부청구	417
7. 참가압류	420
8. 압류재산의 매각	423
9. 청 산	435
제5장 지방세 구제제도	446
제1절 개 요	446
제2절 이의신청(1심)	449
1. 청구 대상 및 기간	449
2. 신청자	449
3. 신청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449
4. 결정기간	450
5. 결 정	450
6. 결정의 효력	450
제3절 심사청구(2심)	451
1. 청구 대상 및 기간	451
2. 제출기관	451
3. 결정에 대한 불복	451
4. 결정의 효력	451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452

제5절 행정소송	452
1. 제소기간	453
2. 피 고	453
3.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45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1절 서 설

1. 지방세의 의의

가. 권력관계설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공권력관계에 의거 판단하는 견해로서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재정하명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는 조세법률 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지배-복종의 관계로 이해되며 납세의무의 확정 은 과세관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는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관계설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행위는 기 성립된 지방세채무를 확인하고 그에 기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하든 과세관청이 하든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납부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부과징수행위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보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세의 법원(法源)에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시·도세조례 및 시군·자치구세조례가 있으며, 관련 법규로는 국세와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있다.

[사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기준 판단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라2, 2004.9.23)에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인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경계를 행정구역 관할기준으로 삼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행정구역 미확정으로 인한 지방세 채권에 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함(행자부 세정-3337, 2004. 10. 5)

[사례] 조례미개정시 지방세법 적용 가능성

지방세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00구세조례 제1조에 의하면 00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준거하여 조례 혹은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00구세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0구세조례 제1조 및 지방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 지방세법의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 등을 감안할 때 개정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용세율의 경우에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써 세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844, 2005. 5. 23)

- 개정 지방세법에 의거 조례가 개정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지방세법은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거 적용되어야 한다.

3. 지방세의 분류

가.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ordinary tax)는 조세의 징수목적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세(稅)를 말하고, 목적세(earmarked tax)는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稅)를 말한다.

- 보통세(11개 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5개 세목)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나. 독립세와 부가세(SUR-TAX)

독립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하여 보유하고 독자의 과세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세라 함은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본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세율로써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예: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다. 법정세와 법정외세

법정세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세목이 있는 조세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세를 말하는데, 이를 의무세와 임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세는 통상 보통세를 말하는데 이는 천재(天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면 또는 불균일과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는 세목을 말하며, 임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지역과 과세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지 않는 세(稅)로서 지방세의 도시계획세·지역개발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정외세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필요성과 의사에 의해 조례로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러한 법정외세의 세원은 특정 자치단체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원을 포착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서 과세를 하여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가기 위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조세이다.

라. 도세와 시군세, 시세와 구세

지방세에서 도세와 시군세 및 시세(특별·광역시)와 구세로 구분하는 것은

조세법학이나 학술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 각 세목의 세입실태와 자치단체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 도 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7개)
 - 시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9개)
 - 특별(광역시)시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13개)
 - 구 세 :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3개)
- ※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는 특별시세와 구세가 공동 과세되는 세목구조로 하고 있음

4. 지방세의 특성

가. 과세자주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탄력세율의 적용, 과표의 결정, 적용비율의 고시, 과세면제조례의 제정시행과 같은 사항은 과세자주성에 기인한 것이다.

나. 보편성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입재원이 전국 각 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격차가 심한 실정이며 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보완하고 있다.

다. 귀속성

하나의 세원이 둘이상의 단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어느 단체에 귀속하여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어느 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 명백히 구분되는 세원을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속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경우 자치단체간 안분제도가 불가피하다.

라. 정착성

세원(과세대상)은 가급적 이동이 적고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로서 적합하며 만일에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한다면 과세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세원(과세대상)은 부동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 안정성

지방행정은 주민생활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경기의 변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급격한 세원의 감소를 가져온다면 생활민원 해결과 필수불가결한 의무적 경비부담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행정의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세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중심 세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바. 분임성

조세는 공평의 원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사람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협동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인 공통비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부담분임의 원칙이다.

사. 응익성

지방행정이 베푸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납세가 응익의 원리상 바람직함으로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세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소방행정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로서 조세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응익성의 원칙은 조세의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보충적인 것으로서 조세가 아닌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으로도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5. 지방세의 관련 용어

가. 과세권과 세무공무원(課稅主體)

과세권이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질문·검사·수색의 권한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전가의 예정유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예상되는 것이 직접세이고, 다른 경우 즉 조세의 전가가 예상되는 것을 간접세라고 한다.

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1) 과세객체(과세대상)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예) 재산세 :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콘도·종합
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2) 과세표준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면적 등을 말한다.(예 :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면허세 - 면허행위 등)

3) 세 율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말하며, 세율에는 비례(정률)·누진·표준·제한·임의세율과 정액세율이 있다.

○ 비례세율(정률세율)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 누진세율 : 재산세 등

○ 표준세율 : 취득세 2%, 도시계획세 0.15% 등

○ 제한세율 : 도시계획세 - 1000분의 2.3이내,

사업소세 - 사업소연면적 1m²당 250원,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로 정함

○ 임의세율

세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로서 임의로 정하도록 한 세율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법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 등에 적용된다. 종전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납기개시일로 함으로써 발생되었던 과징상의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과세기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기개시일을 정함으로써 부과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과정에 정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재산세 : 매년 6. 1)

납기개시일은 납기가 개시되는 날을 말하며, 재산세의 경우 납기개시일은 단순히 납기도래 된 지방세의 납부가 개시되는 날로서 납세의무성립과는 무관하나(건물분재산세 : 매년 7. 16, 토지분재산세 : 매년 9. 16) 사업소세(재산할)는 납기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동일하다.

마. 납세고지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통지의 절차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된다.

<대판> 납세고지서의 성립요건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와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 세액의 산출 근거, 납기 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와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

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판 93누11944 '94. 6. 14)

바. 정기분과 수시분

정기분은 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예 : 재산세 7. 16~7. 31)

수시분은 일정한 납기가 정해있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유보 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 :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고지)

사.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방법이다.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납입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대판>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세권자와의 조세법률관계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 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 조세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를 근거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특별징수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82누174 83. 12. 13)

아. 신고납입과 신고납부

신고납입이란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하고,(예 : 주민세소득할을 특별 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취득세 : 취득 후 30일 이내)

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납입 하여야 할 지방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 납부한 경우에 징수하는 벌칙금적인 세금의 일종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하며(예: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등기를 하고 이전하여야 할 경우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증가산세율 100분의 80까지 적용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 신고하여 확정된 세액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하는 경우에 미납부세액이나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을 곱하여 과세하는 가산세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된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법제27조의2)

<판례> 가산세 부과요건

- 행정별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대판 91누5341)
- 고의, 과실,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대판 93누20467)
- 납세의무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대판 93누15939)

차.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당초 20%에서 10%로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는 별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 기일에 따라서 추가로 가산·부과되는 것이다.

카. 가산금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세액(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이 부과되며, 증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분의 12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미만인 경우는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못한다.(2001년부터 30만원기준이며, 2000년까지는 10만원이었다.)

[사례] 지방세 증가산금 적용시기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증가산금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제2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4. 1. 1 이후부터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가산금이 적용됨.(행자부 세정13407-아768, '98. 11. 3)

제2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1. 지방세의 부과원칙

가. 실질과세의 원칙(실질주의)

조세법률 관계에서 형식·외관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질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담세능력을 고려한 적정과세를 실현하고 또한 실질과 어긋나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부당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납세주체에 관한 실질주의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관한 명의상의 귀속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를 경우에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납세주체)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과세객체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 계산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해석적용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리스자동차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

에 쫓아 성실히 즉 신의성실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미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식적 견해표명을 반복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처분(과세처분 기타)을 행한 경우에 신의칙 위반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비록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 가능한 행정처분이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 납세자는 공적 견해에 대하여 신뢰하며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는 견해표명에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함
-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을 함으로서 불이익 초래

[판례] 위임입법의 한계와 예측가능성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은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

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다. 근거과세의 원칙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전적인 의미는 근거과세는 행정상의 계산기준(A. smith의 확실성의 원칙)또는 법적근거(A. wagner이후의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를 요구하는 과세원칙이다.

라.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조세감면 시에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하여 사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방세의 경우도 '97년 말 감면제도에 사후관리토록 지방세 감면 시에 익년도 1월말까지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지방세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거 엄격해석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여야 한다.(법제1조의2)

가.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비취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 침해를 막자는 취지의 원칙이며 조세법이 본질적으로 침해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그러한 침해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계선을 명확히 제시하자는 의미의 원칙이다.

여기서 부당의 의미는 조세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위법과 부당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근거과세의 원칙과의 관계는 근거과세의 원칙은 자의과세를 배제하자는 취지를 지니므로 결과적으로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면도 있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 입법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지방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입법 제한규정을 구체화한 선언적인 성질의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한다.

2) 행정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해석이나 세무행정관행이 납세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다. 세무공무원 재량권 한계엄수의 원칙

세무공무원이 재량에 의하여 직무수행(과세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조세법규인가를 판단하는 선에서 그치는 법규재량(기속재량)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일탈에 의한 조세처분이 있게 되면, 그러한 조세처분은 단순한 부당처분이 아니라 위법처분(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위법한 징수처분)이라고 보게 된다.

라. 기업회계준중의 원칙

세무조사와 결정(또는 경정)에 있어 세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판례] 기본통칙의 법규성과 적용범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5611 판결)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확대·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조세채권채무관계설의 입장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 사실이 발생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은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자의 위치에 서고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는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과오납금이 된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내용에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액과 세율도 내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것을 적용한다.

가. 납세의무 성립의 중요성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을 위한 법령적용의 기준과 납세지 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고, 납세의무자 판단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과 그 범위결정의 기준,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결정기준이 되며 부과시기의 결정기준과 제척(除斥)기간 기산의 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하다. 그러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그에 터 잡아 경제행위를 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입을 경우에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날(시행령 제73조의 취득시기)
- 등록세 : 재산권·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

-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면허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면허 등은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됨)
- 주민세 : 균등할(과세기준일 : 8. 1), 소득할(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2005년부터 5년간 과세중단)
- 도축세 :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
- 레저세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 사업소세 : 재산할(과세기준일 : 7. 1), 종업원할(종업원에게 급여지급하는 때)
- 지역개발세
 - 발전용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 또는 채수하는 때
 - 지하자원을 캐는 때
 -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 특별징수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특별징수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농업소득세를 특별 징수하는 때
- 수시부과 지방세 :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방법(자기부과제도)과 보통징수방법(정부부과제도)등이 있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인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자진납부 또는 과세권자의 징수결정 등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상의 각 세목별로 그 확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신고하는 지방세 세목 : 신고하는 때(다만,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로 함)
- 지방자치단체 부과고지 세목 :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재산세 등)
-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이 경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순위를 판단하는 법정기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확정	법정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 결정일 - 특별징수 세목 : 특별징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 고지서 발송일 - 특별징수 세목 : 특별징수 시

3. 납세의무의 확대

민법상의 채권·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당사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주민을 위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승계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다.

가. 승계납세의무자

1) 법인의 합병(법 §15)

가) 합병의 형태

- 신설합병 : 갑법인 + 을법인 → 병법인
- 흡수합병 : 갑법인 + 을법인 → 갑법인 또는 을법인

나) 승계의 범위 및 절차

- 피합병법인(소멸법인)에게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
- 피합병법인에 대한 고지, 독촉, 압류는 합병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

2) 상속(법 §16)

가) 상속(유증)의 시기(상속의 개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실종기간 만료일

나) 납세의무 승계자

- 상속인, 수증인, 상속재산의 관리인

다) 요 건

- 상속의 개시가 있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 재산상속이 확정되어야 한다.
 - ※ 상속인 대표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 승계의 범위 또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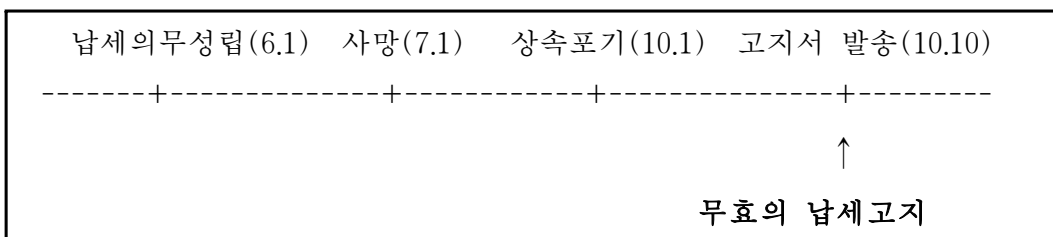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또는 부과(납입)할 지방세
 - －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한다.
- 기타 절차는 법인합병의 경우와 같다.

<승계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자	승계납세자	납세승계의 범위
피상속인	상속인(유증 포함)	상속재산 범위 내(한정상속)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전 체납세액

※ 유증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사인증여에 의하여 수증 받게 됨으로 취득세의 경우 상속(유증, 포괄유증), 등록세의 경우 상속등기 중 유증에 의한 부동산 등기는 상속에 의한 등기로 보아 과세(0.8% 적용)한다.

상속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전달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이 수인이고 상속 지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면 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대표자를 신고하면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사례] 승계납세의무자의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승계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주민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당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111, 2005. 12. 1)

-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상 그 범위는 없으나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함.

나. 연대납세의무자(법 §18)

-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과세물건이 2인 이상의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각자 독립하여 전체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1인이 납부하면 다른 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공유물, 공동사업이외에 기업분할(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 포함)의 경우에도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 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 분할되는 법인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또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이상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상법상의 조직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본래의 회사는 소멸·축소된 상태로 존속되고 그 회사의 주주는 본래의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인적분할의 일종이며,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경우를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

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사례] 공유물과 연대 납세의무자의 범위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공동사용물·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두 사람(갑·을)이 공유로 각자 1/2씩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에 있어 공유자중 1인인 “갑”이 자기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다른 1인인 “을”이 자기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규정에 의거 “갑”이 “을”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져야 한다.(행자부 세정13407-아1139, '98. 12. 17)

다. 제2차 납세의무자

- 조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당초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한도로 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자	납세의무 범위	요건
청산인	상장, 비상장법인	인도분배재산 범위 내	법인해산, 잔여재산
과점주주	비상장 법인	채납액×과점비율	비상장 법인
무한책임사원	비상장 법인	무한대	충당부족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자산-부채]×비율	출자재산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양수재산 범위 내	사업의 양수도
건축물소유자	사업자	사업주의 재산범위 내	부족분 사업소세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설정자	양도담보물	양도재산

1)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법 §20)

가) 요 건

-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 해산 전에 부과된 또는 부과될(납입할) 징수금이 있을 것
- 주주 또는 사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것
- 채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액이 있을 것
- ※ 집행 불능의 경우를 포함

나) 범위

- 청산인 :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 ※ 청산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판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2) 출자인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법 §22)

가)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은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 출자한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재산까지도 변상책임이 있는 사원

나) 과점주주

-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으로서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자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2)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영 §6)

-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⑥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 ⑦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⑪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①~⑩항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⑫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① 내지 ⑧항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理事)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요 건 ▶

- ①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 법인」의 주주·사원일 것
- ②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초과할 것
- ③ 집단성
- ④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다) 범 위

- 무한책임사원은 소유한 재산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와 과점주주와의 관계

“법인의 발생주식 총액”에는 상법 제3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발행주식 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행자부 세정13407-아194, 1998. 8. 11)

[사례] 특수 관계자 판단과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출자법인(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 포함)이 출자를 하고,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의 종업원도 출자를 하였을 경우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과 그 종업원의 관계를 말하는 바, A가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B에게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액의 급료를 지불하여 고용관계에 있다면 A와 B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행자부 세정13407-35, 1998. 1. 22)

3) 과점주주가 소속된 법인(법 §23)

가) 요 건

-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일 것
-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체납액이 있을 것
-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재산(출자분 제외)으로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공매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일 것

나) 범 위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법인재산총액-채무총액)×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의 주식(출자)총액/법인주식(출자)총액

4) 사업양수인(법 §24)

가) 요 건

-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야 함
- 양도·양수일 현재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징수금이 있을 것

-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나) 범 위

- 사업에 관한 징수금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실상 양수금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사례]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의 의미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라 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나,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행자부 세정13407-75, 1997. 1. 25)

[사례] 사업양수인과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나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만을 양수하

고 영업권·종업원 등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행자부 세정13407-자554, 1998. 6. 30)

5)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소세 제2차 납세의무(법 §244)

사업소세의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법 §36)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금이 부족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세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양도담보권자가 의무불이행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4. 납세의무의 소멸

가. 의 미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부과고지 납부나 자진신고납부 모두 의무를 이행(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여 소멸시키고 있다.

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이의 이행을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

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 한다.

소멸시효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로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 내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기가 경과하면 압류처분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징수할 수 없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구 분	소멸시효(징수권)	제척기간(부과권)
기 간	5년(징수권의 존속기간)	5년(7년, 10년)
요 건	납기한 익일	납세의무성립일(납부기한 익일)
효 과	시효의 중단, 정지	중단이 없음

1) 부과제척기간(법 §30조의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5년(7년, 10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하는 실익은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의 중단, 정지제도가 없다.

가) 요 건

- 지방세의 부과권이 있을 것
- 지방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음의 날로부터 5년간 이행하지 않았을 것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 및 수정신고기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 판단>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
-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정사유가 발생하여 추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나) 효 과 : 기간의 경과로 지방세의 부과권은 확정적으로 소멸

다) 예 외

-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간으로 함.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2) 소멸시효(법 제30조의 5)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를 불문하고 그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이에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에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합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과오납금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된다.

가) 기산점과 기간

- 기산점 : 그 권리를 진행할 수 있을 때 (초일 불산입)
-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 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기간 : 5년

나) 시효의 중단과 정지(법 §30조의 6)

- 중단 : 다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시효기간의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교부청구
 - 독촉,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압류
- 정지 : 정지전 기간은 진행기간에 산입된다.
 -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 분납기간

- 중단된 시효의 재 진행(다음 기간경과 시)
 -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 독촉, 교부 또는 납입의 최고에 의한 납입기간
 - 교부 청구중의 기간
 -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사례] 공유물과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갑설(병·정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병·정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갑·을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됨)』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3407-아312, '98. 9. 1)

다. 부과취소 및 변경(법 §25조의 2)

1) 요 건

- 지방세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 때.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안으로 계류 중이거나 결정(기각)이 된 경우에도 취소·변경가능

2) 효 과

- 납부의무 소멸
- 과오납금 환부청구권 발생

라. 부과철회(법 §42조의 2)

송달불능으로 인해 유예한 경우 지방세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부과철회하며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마. 결손처분(법 §30조의 3)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채권을 자기 스스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이다.

1) 요 건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부족액에 한함)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므로 또 다시 결손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음.
-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 ※ 10만원 이상인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2) 효 과

- 지방자치단체징수금 납세의무 소멸(통지여부 불구)
-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조치. 단, 시효완성 시는 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사례] 결손처분 취소 없이 한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2.17. 2003두12363), 또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서 그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7. 13. 2000두5333) 납세의무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행자부 세정-1579, 2005. 7. 11)

[사례] 부분결손처분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자의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체납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13430-204, '98. 7. 8)

제4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緩和), 납세보전 및 환급

1. 지방세 채권의 확보

가. 부과·징수

세목별로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제도(자기부과제도)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한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함으로써 납부하는 제도(정부부과제도)가 있다.

1) 납세고지(법 §25)

-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지방세를 일정한 문서로서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요식행위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납세고지서는 보통징수의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이며, 납입통지서는 특별징수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재사항으로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구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발송시기

- 정기분 ... 납기개시 5일전
- 수시분 ... 징수결정시
- 징수유예분 ... 기간만료의 익일

나) 납부 또는 납입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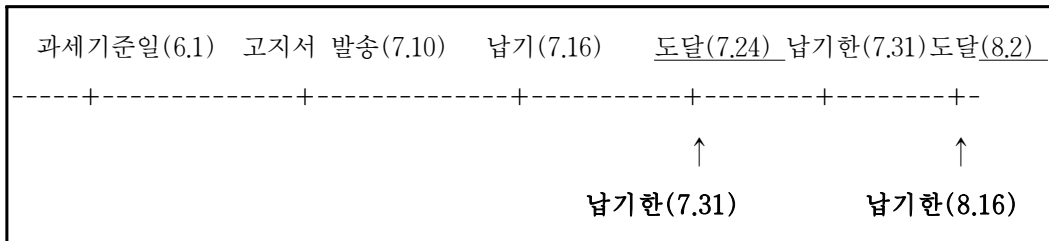
- 고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의한 기한.

※ 납기한 적용의 예외(법 §51조의 2①)

- 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 경우 송달받은 날이 납기한을 경과하였거나 납기한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납세고지서의 도달과 납기한의 계산방법>



서류의 송달문제는 본인이 금치산자,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무방하나 대리인에게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도달 문제가 발생(미성년자가 도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다.

다) 서류 송달방법

- 직접교부 ... 송달부에 납세자 서명
- 우편 ... 등기우편
- 교부불능 시 ... 공시송달
- 전자우편송달 시 ...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도달

다만,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 시에는 도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배달증명이나 직접교부대장 등을 비치하여 하여야 한다.(대판 96누3562, '96. 6. 28 참조)

라) 전자서류의 송달장소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소등”이라 한다] 에 송달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별표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별표 9]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제1조제3항관련)

항 목	기 준
목 적	지방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전자적으로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범 위	1.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2.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서 3. 신고안내문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서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한 지방세 송달서류
도달일자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고 지 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영하는 전자우편주소
자 료 의 송	지방세납세고지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등기우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마)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효과

- 납세(납입)의무의 구체적 확정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시효중단효력
 - ※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도달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바) 송달장소

- 고지서, 독촉장, 체납관계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에서 지방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법 §51의2)
-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사례] 서류의 송달범위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하겠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례 90누4334, 1990.12.21. 참조)으로, 법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을 당해 법인의 구내 우체국에 파견하였고, 이러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이때 법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은 해당 법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행자부 세정-2040, 2007. 6. 5)

사) 공시송달(법 §52, 영 39조의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 국외에 주소, 거소, 영업소가 있어 송달이 곤란할 때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
-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공시송달 시에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도달일로 보고 도달간주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도 납기한 적용의 예외규정과 같이 납기전 정수 시에도 적용해야 한다.

2) 시·도세의 징수위임(법 §53)

시·도세는 시장·군수가 징수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하나, 필요시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징수금을 익일까지 도금고에 불입, 불입기관이 없는 경우는 5일 이내에 불입하여야 한다.

징수교부금이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징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징수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갖는다.

징수교부금의 비율은 3%로서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매분기말일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해야 하는바, 시·도세조례로서 달리 정할 수가 있다.(예 : 일부 시·도에서는 시, 군,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달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지역도 있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예: 지방교육세)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3) 징수촉탁(법 §56, 영 §44)

징수권이 있는 자치단체 관할지역내에 납세자가 없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한 경우 촉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이 문서로서 촉탁하는 바, 촉탁 받은 자치단체장은 징수촉탁인수서를 발부하고 납세자에게 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불능일 경우 촉탁한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효 과

- 촉탁 받은 자치단체장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송금할 의무와 책임

을 진다.

- 징수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촉탁 받은 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체납처분비와 징수촉탁 교부금(체납처분비를 뺀 나머지 징수금의 3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송부한다.
- 촉탁을 받은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등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징수촉탁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한다.

4)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추징(법 §85)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 또는 부과 누락된 지방세는 일시에 부과징수하며 과세요건이 충족될 당시의 과세표준·세율에 의한다.

5) 독촉과 가산금 (법 §27)

가) 독촉의 요건

- 지방세를 납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 독촉장 발부

- 납기한 경과 후 15일내(은행납의 경우는 50일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부
- 독촉장은 1회에 한하여 발부하여야 하고 고지서 매수마다 발부

[사례] 독촉의 효력과 방법

지방세법상의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독촉 후 수차례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발부행위는 민법상 최고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최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압류 등을 하

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 13407-1242, 2000. 10. 27)

다) 효과 : 독촉기간 내 미납 시 체납처분 가능, 가산금과 증가산금부과

라) 가산금 징수

- 납기경과 시 3%, 납기경과 매1월 경과 시마다 1.2%씩 증가산하여 60개월간 72%까지 증가산금부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가산금 불가산
- 세목별 고지서 매당 세액 30만원 미만은 증가산금 불가산
 - ※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불가산한다. 단, 납기경과 후 유예결정시는 기 가산된 가산금은 징수해야 한다.

나. 징수 관련 제도

1) 기간의 계산과 기간의 연장(법 §59)

가) 기간의 의의

- 특정시점에서 특정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간
- 일정한 기간의 만료를 기한으로 하는 경우(납기한)
- 법률로 기간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소멸시효)

나) 기간의 계산방법

- 시·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되,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는 다음에 의한다.
 - 초일 불산입(영시(零時)부터 시작될 때는 산입)

-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 당해월의 당해일이 없으면 말일에 만료

다) 기한의 특례

-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납부, 통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하나, 「근로자의 날」도 포함한다.

라) 화재 등으로 인한 기한 또는 기간의 연장(국세기본법 준용)

- 기한 또는 기간 연장사유
 - 천재, 전화(戰禍), 기타 재해, 도난을 당한 때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사업에 극심한 손해를 입은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함)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영치된 때
- 연장신청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신청하고 연장승인은 문서로 승인여부 통지

[지침] 금융기관 토요일휴무제 운영에 따른 신고납부운영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하여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일반적인 경우는 월요일이 되나, 월요일도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됨)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행자부 세정 - 470, 2004. 2. 4)

2) 질문검사권(법 §64)

가) 세무공무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나) 질문 및 검사대상자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자 등과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검사물건 기타

- 피검사자의 장부, 서류
- 기타의 물건
-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공을 명한다.

※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例)에 의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명서를 휴대제시 하여야 한다.

3) 기수(既收)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법 §57, 영 §45)

가) 요 건

- 특별징수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망실한 경우라야 함.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피한 사고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注意)의무를 다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함.

- 불가피한 사고로 망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나) 면제신청과 결정

- 시·군세는 시장·군수, 도세는 도지사에게 증명서류첨부 면제신청
- 시장·군수·도지사는 30일 이내 결정통지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제기
- 심사청구는 30일 내에 결정

4)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법 §82)

-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준용의 범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제한됨으로 과세요건이나 납세자의 주체 등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과 : 조사결정으로부터 납세의무확정과정까지 포함
 - 징수 : 징수행위, 독촉과 체납처분까지 포함
- 준용한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그대로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각 법조항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실정에 맞도록 변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국고금 단수(端數)계산법 준용(법 §83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한다.

※ 단수처리는 총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분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6) 조세범처벌법의 준용(법 §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가) 세무종사공무원

세무종사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정규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

나) 압수, 수색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범칙행위자나 관계자를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에는 법원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가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있는 시·군은 48시간 이내, 법원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압수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

심문, 압수, 수색 또는 영치 시에는 그 전말을 기재한 후 입회인 또는 피심문자의 확인을 얻어 그와 함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보 고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범칙피의자의 거주가 분명치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7)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법 제87조)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요구(법 제8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기관(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과세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

1.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나) 자료의 제출 범위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의하여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사업자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 관서중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납기 전 징수(법 §26)

1) 의 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어려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보전을 위한 것이다. 납세자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요 건

- 납세의무가 성립 후 확정되어 있는 세금일 것
(예)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났으나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것
 -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선고를 받을 때
 -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납세관리인 없이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3) 절 차

- 납세고지서에 납기 전 징수사유 기재 고지
- 기 고지시는 납부기간의 변경을 고지하고 납기 전 징수의 뜻을 고지

4) 효 과

납기 전 징수는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개시할 수 있음

2. 지방세 채권의 완화(緩和)

가. 기한의 연장제도

1) 요 건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여기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단축, 부도발생, 기업도산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연장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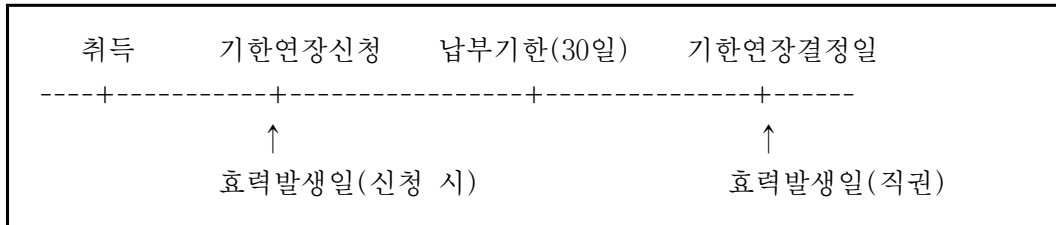
기한의 연장을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상에는 규정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조례에서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을 할 수가 있으며, 재신청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국세의 경우는 기한 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과세권자가 연장기간을 판단 적용한다.

3) 효 과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각종 기한이 연장되므로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때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과세권자의 기한의 연장결정이 신고납부 기한이후에 결정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징수유예와 같이 신청 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징수유예 등

1) 요 건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지세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징수유예 등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이미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야 함.
-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 도난을 당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납세자가 관할지역 외에 있고 주소불명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가 반송된 때
-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업장이 외국에 있어 고지가 불가능할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징수유예 등의 종류

가) 고지유예

납세자가 납세의무성립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분할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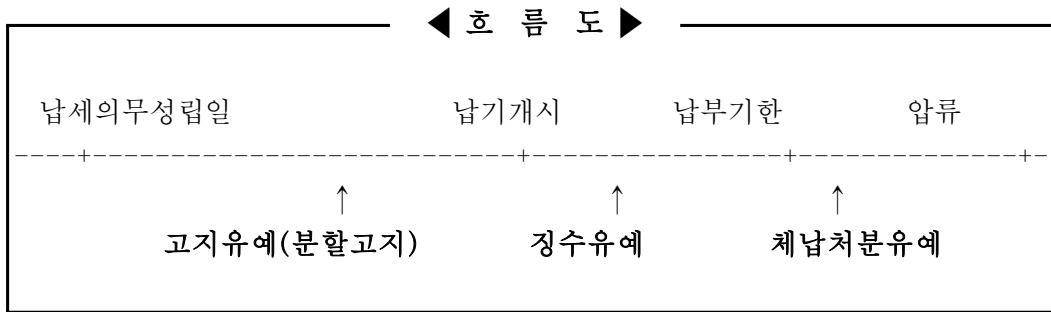
납세자가 납세의무성립이후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징수유예

납세자에게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체납처분 등의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절차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갖추어 징수유예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징수유예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며 징수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금액, 기간, 분납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권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징수유예 시에 제공되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주택,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4) 유예기간

과세권자가 징수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징수유예결정일로부터 6월 내의 기

한을 정하며, 1회에 한하여 6월 안에 다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징수유예신청서 접수일부터 기산되는 것이나,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효과(법 §43)

- 과세권자가 징수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그 유예기간은 체납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불가산되며 체납처분도 그 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징수유예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착수한 경우 교부청구는 가능하다.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6) 징수유예의 취소

징수유예를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기한의 연장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 때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는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회(撤回)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세징수금을 일시에 징수가 가능하다.

라. 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차이비교

구 분	기 한 연 장	징 수 유 예
요 건	천재지변 등, 장부의 영치·압수	천재지변 등, 고지송달 불능 시
기 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6월(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대 상	신고납부하는 세목	부과고지하는 세금
신청 기한	신고납부 기한 전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 시
효 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 배제

※ 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는 위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나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이 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하게 된다.

마. 물납제도

1) 법적 근거

- 지방세법 : 제26조의3, 영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3

2) 주요 내용

- 가) 대 상 자 : 재산세 납부세액의 1천만원 초과 납세의무자

나) 물납대상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주택 또는 건축물)

※ 건물분 재산세 납부시 토지로도 물납가능, 토지분 재산세 납부
시 건물로 물납가능

다) 방 법 : 물납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허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경우 불허가 처리가능)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범위]

- ① 당해 부동산에 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
- ②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③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 변경신청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시 물납허가 가능

라) 신청기한 및 처리

- 신청기한 : 납부기한 10일전까지(건물분 7. 21일까지, 토지분 9. 20일까지)
- 허가처리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여부를 서면통지
(건물분 7. 26일까지, 토지분 9. 25일까지)

마) 납부간주와 효과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필
증을 교부 받은 때를 납기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

바)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적용기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적용
- 건물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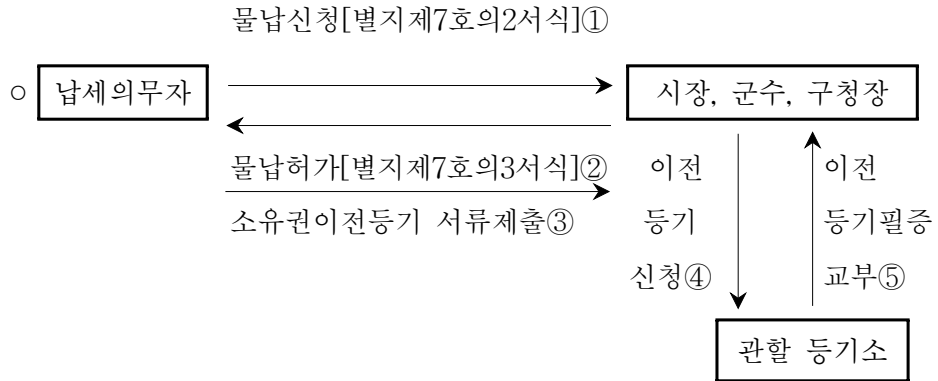
(단,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사실상의 시가가 2이상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 예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확정된 가액으로 다음의 가액으로 한다.

-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2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사실상의 취득가액(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사) 물납절차



※ 불허가시 불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변경신청하면 다시 물납허가 가능

바. 분납제도

1) 법적 근거

○ 지방세법 : 제26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5, 시행규칙 제9조의 4

2) 주요 내용

가) 대상자 : 재산세 납부세액의 5백만원 초과 납세의무자

나) 분납신청기간 : 납부기한 내

다)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

라) 분납기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 초과금액

(납기 내 : 5백만원, 분납기간 : 5백만원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한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기 내 : 50% 이상 금액, 분납기간 내 : 50% 이하의 금액)

마) 절 차

○

납세의무자

 →

시장, 군수, 구청장

① 분납신청[별지제7호의4서식]

② 수정고지 : 납기 내 납부고지서 + 분납기간 내 납부할 고지서

바) 효과 : 가산금과 증가산금의 배제

3. 지방세 납세보전

조세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여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납세보전을 위한 것이다.

가. 지방세의 우선(법 §31)

1) 우선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직접채납처분비의 우선(법 §32)

지방세 채납으로 채납처분을 한 경우의 채납처분비는 다른 채권(조세채권 포함)에 우선한다.

3)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법 §34)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청구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한다.

[판례] 압류선착수원칙의 적용 범위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두2197 판결)

4)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법 §35)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의 지방세는 다른 자치단체와 국세관서가 압류를 선착수한 경우에도 이에 우선한다.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중의 우선순위(법 §33)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가산세를 포함한 본세) 순으로 한다.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1) 근거법령

가) 지방세법상 근거

- 지방세법 제38조,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행정자치부 고시 1998-50('98. 5. 13)

2) 증명의 종류

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명

- 납세증명서 :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

3)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제3자가 신청 시
위임장(용도 란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용 등 명기)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어야 함)

4) 신청방법 : 구두, 서면(전화,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가)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시 기재사항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 증명서의 소요수량

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신청 시 기재사항

- 민원처리전표에 의거 신청

5) 발급요령

가) 서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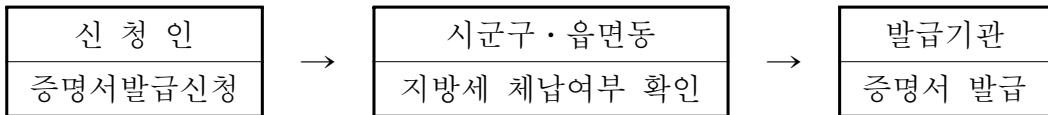
- 지방세납세증명서(별지 제11호 서식)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36-G-31 서식)
 - ※ 별도의 처리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규정의 발급절차에 준하여 처리

나) 발급신청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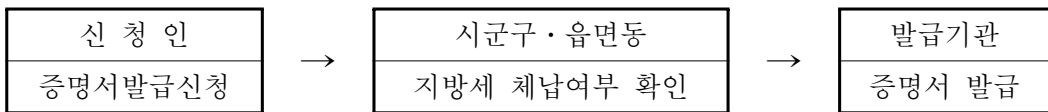
- 법인 : 본점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관할 시군구의 완납통보에 의하여 발급
- 개인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
 - (※ 종전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장소 경유 발급)

다) 업무흐름도

- 5년간 계속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5년 이내 주소이동이 있는 경우



※ 전 주소지에서의 체납여부 조회

라) 처 리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
 - 그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주소지에 과세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 없는 재산세 관련 증명이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을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신청 시 발급처리 하되, 비고란에 「체납액 00원」을 표기하고 체납이 없으면 「체납액 없음」을 표기하여 발급
 - ※ 비과세 또는 감면인 경우 : 「비과세」, 「면제」라고 기재함.
-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신청서에 「과세사실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
- 과세물건지란에 과세대상물건이 수개인 경우 「~외 ~」식으로 표기하여 과세물건별로 발급하되 타 내용을 부기하지 말 것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증명서에 관한 내용은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개인정보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제3자의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거부

6)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한다.(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예: 7. 5 발급신청 시 재산세 납기가 7. 31이므로 7. 31까지 유효기간을 표기)

※ 납세영수증으로 납세완납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사례]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기관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자부 세정-3362, 2007. 8. 22)

[사례] 지방세 납세증명의 효력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지와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는 날 현재의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납증명서의 발급사실로 미루어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체납사실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세액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음.(행자부 세정 13407-가149, '98. 4. 24)

다. 지방세법상 관허사업제한

-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영 제24조 내지 제28조, 시행규칙 제15조
- 자치단체별 지방세조례(※ 서울의 경우 : 서울특별시세조례 제8조)

2) 관허사업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허가·인가 등록 등은 관허사업의 예시적 표현에 불과하며, 따라서 신고·검열·검사·지정 등이라도 권리설정이나 금지를 해제하는 성격의 행정행위라면 제한대상에 포함된다.
※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에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사업(국세징수법기본통칙 1-0-14-0--7참조)
- 권리의 설정,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준법률적 행정행위(신고, 확인, 공증 등)는 관허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허사업의 명칭에 불구하고 관허사업이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 또는 권리설정적 행위에 해당되면 관여사업에 해당된다.

[사례] 관허사업제한의 범위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의 범위에는 보 조금 신청행위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없음(행자부 세정-2459, 2007. 6. 27)

[사례] 관허사업제한 대상에 해당여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 체납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의 발행 또는 납세의무 승계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법인에게 관허사업을 제한을 할 수 없음. (내무부 세정 13407-531, '96. 5. 11)

3) 관허사업제한의 요건

소극적 관허사업의 제한	적극적 관허사업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 정당한 사유 없이 ○ 지방세를 체납할 때 ○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가) 정당한 사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범위(영 제24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 송달되었을 때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戰禍)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할 때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나) 체납횟수의 계산과 기간

(1) 체납횟수 계산

체납횟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단위로 세목별로 3회 이상 체납여부를 조사하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1년에 관계없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 취소요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방세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2002. 1. 1이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2) 체납횟수의 계산방법

- 지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하고 1고지서에 수개의 세목이 고지되는 경우, 각 세목별로 1회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예) 재산세 납세 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병기고지한 경우

로서 체납된 때의 체납횟수 계산방법

→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회 체납으로 계산

- 관허사업의 취소대상과 제한대상의 구분할 경우에 지방세의 체납횟수가 3회이상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된다.

(예) 2002년도 자동차세(1기분)체납 및 2002년 면허세와 2002년도 자동차세(2기분)체납 시 관허사업 취소대상 판단

→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 대상이므로 이는 관허사업취소 대상에 해당

[사례] 관허사업 제한대상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자146, '98. 4. 10)

(3) 체납지방세의 범위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본래 체납자 자신의 납세의무에 기인된 지방세와 제2차 납세의무로 기인된 체납지방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예) A와 B가 공동사업자로서 관허사업을 하는 경우 A가 자동차세, 자동차분 면허세를 체납하였고 B가 주민세(양도소득세할)을 1회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취소 요구대상이 됨

(A : 2회 체납 + B : 1회 체납 → 3회 이상 체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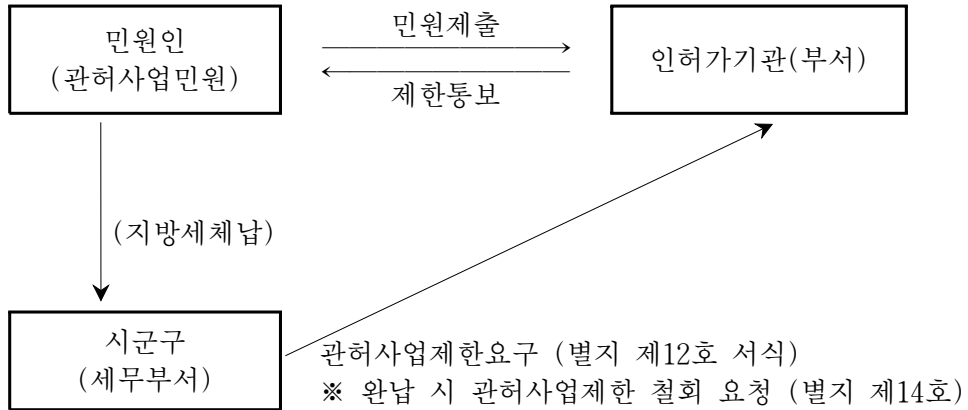
(예)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 지입차주 A, B가 자동차세를 각각 2회씩 체납하였을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인 관허사업취소 요구 불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입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요구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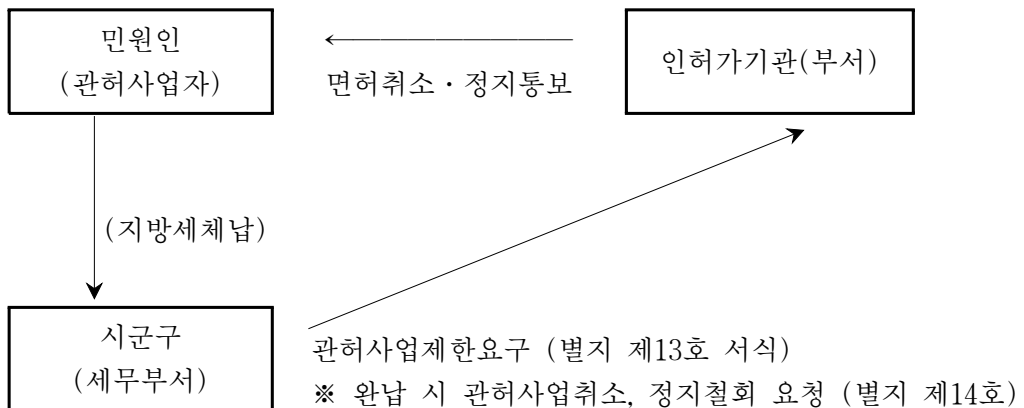
(4) 관허사업제한 업무의 처리

(가) 관허사업제한 업무 흐름도

○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시



○ 관허사업취소, 정지요구 시



(나)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동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법령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사례]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사업면허취소를 요구하여 당해 세무관청인 피고가 위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이와 같은 사업면허취소를 요구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요,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오히려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73누67, 75. 4. 22)

[사례] 관허사업의 제한과 민원처리와의 관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서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그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해 지방세를 체납한 때는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도로부지점용허가원」을 제출한데 대해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관허사업 제한을 하였다면 적법한 처분에 해당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720, '97. 7. 3)

라. 납세관리인 지정(법 §37, §18)

1) 설정요건

-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

2) 설정 및 변경신고

-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신고
-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

3) 설정 및 변경지정

- 설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가 설정명령
- 불이행시 직권으로 지정통지
- 변경명령 및 직권변경 가능

4) 효 과

고지서 송달·독촉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같이 취급함.

마. 지방세의 상계금지(법 §63)

지방자치단체에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으며,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음.

바. 납세담보(법 §28, 법 §42, 영 §33, 영 §32)

1) 징수유예의 경우와 수시부과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 요구

2) 담보의 종류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자동차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3) 담보의 평가

-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함.
- 상장유가증권 중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제공 전일의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
- 미상장 및 상장된 것 중 매매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함.
-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함
- 토지, 주택,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표준액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전문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

4) 담보의 제공방법

- 납부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의 담보물
 - ※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100분의 110
-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납세담보는 그 공탁수령증,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한 등기필증 제출
- 납세등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 ※ 납세등록보험증권의 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의 필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함

사. 사해행위의 취소(법 §61, 영 §48)

- 채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점을 알면서 양수한 경우(양도인, 양수인 공히 고의 필요)에는 그 행위를 취소 요구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채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4. 과오납금의 환급

가. 과오납금의 개념

- 과납 : 실제 납부할 징수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
- 오납 : 납부의무가 없는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나. 환부이자(법 §46, 47, 영 §39)

- 이자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 산율의 이자로 적용

구 분	'06.5.1 ~ '07.10.14.까지	2007.10.15.부터
환부 이자율	1일 11.5/100,000	1일 13.7/100,000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06-10호	국세청 고시 제2007-32호

○ 환부이자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환부금 : 그 납부 또한 납입일의 익일
- 2이상 납기 또는 분할납부한 경우 : 최종납부일의 익일. 단, 과오납금이 최종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역으로 산정하여 과오납이 된 날의 익일
- 적법한 처분에 대한 감면의 경우 : 결정일의 익일
- 적법한 처분이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이 된 경우 : 법률 시행일의 익일
-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다. 환부절차(법 §45 , 영 §38)

- 환부하는 연도의 지방세 납입금에서 환부
단, 연도 폐쇄기까지는 당해년도 수입금에서 환부가능

- 도세도 시군에서 환부. 단, 부족시 도에서 직접환부(송금방법 지급)
- 절차
 - 환부결정통지 → 납세자(과세권자) → 지급명령 → 지급 → 지급필
통지 청구 → 금고
 - ※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령 시는 위임장 제출

[판례] 과오납금환부존부청구권 여부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라. 충당과 양도(법 §45, 영 §36)

- 충당 :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
- 양도 :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지급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우선 환부

마. 공탁(법 §62)

지방세법상 공탁은 금전공탁에 한하고 있으며 공탁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체납처분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액을 반환할 경우와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부와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요 건

- 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자가 금전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 세무공무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금전에 한한다.(체납처분 시는 물품도 가능하다고 봄)

2) 방법과 절차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함.
- 교부받을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탁소에 임치(任置).
- 채권자에게 공지하고 공탁물 수령서를 교부

3) 효 과

- 채무이행의 효력발생(채권소멸)
- 임의로 공탁을 취소하지 못함.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교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65조~제69조, 영 제50조~제52조, 시행규칙 제36조
- 시도, 시군구 납세자권리현장 고시

나. 납세자권리현장의 의미

- 법률(지방세법)에 납세자의 권리로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공무원의 실천 의지를 담아 일반국민 내지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지방세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친밀감 있는 문체로 작성한 안내서를 말함
- 권리현장 그 자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법적 효력이 나오지 않으며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나 재정법인 지방세법상 관련 법규정임.

다. 납세자권리현장의 성격

1) 지방세 입법의 지도원리

-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은 지방세의 입법이념이고, 지도원리에 해당되어 앞으로 지방세 입법에 있어서 기본방향

2) 실정법상의 권리

- 납세자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적, 프로그램적인 권리보장제도로 규

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받는 권리로 인정

라.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교부

1) 구성 및 내용

가) 전 문

- 납세자의 권리와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의무
-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목적

나) 본 문

[필수적 명시 사항]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결과통지, 연기신청
-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의 금지
-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기타 포함할 사항]

- 불복청구에 대한 신속한 구제
- 지방세담당 공무원으로부터의 공정한 대우

2) 형 식

가) 공시주의

- 과세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 내용 고시

나) 범 위

-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내용,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고시되어야 하므로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납세자권리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3) 교부시기

가) 의무적 교부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등 범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금전 또는 물품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세범에 대한 범칙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함

(가) 범칙사건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제2장(제8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관한 사건

(나) 교부대상

- 범칙사건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및 그와 금전 또는 물품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범칙혐의자, 참고인, 기타 대리인 등

(다) 교부방법

- 사전 수색영장 교부 시 : 수색영장 교부 시 함께 직접 교부
- 사후 수색영장 제출 시 : 당해 범칙사건조사 개시 전에 직접 교부

(2)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 7일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며 세무조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한다.

(가) 세무조사의 범위

-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세무조사는 직접조사, 서면조사, 일반조사, 특별조사 등 종류를 불문한다.

(나) 교부방법

[직접조사 시]

- 세무조사 책임자가 세무조사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할 때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
- 세무조사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세무 공무원이 대행

[서면조사 시]

-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이 서면자료를 제출할 때에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
- 우편으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을 송부토록 함

※ 납세자권리현장 미교부 시 과세처분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현행 지방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형사범에 대한 체포구금
시 미란다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형사범혐의자의 경우
반드시 교부하여야 함

나) 임의적 교부(예시)

(1) 재산세 등 부과고지 시

지방세법 및 납세자권리현장에 규정된 납세자의 제반권리가 철저히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권리현장을 널리 안내·홍보하기 위하여 재산세
등 다수의 주민과 관련된 지방세의 부과·고지 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2) 납세관리인 지정 시 (법 제37조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주소·거소를 두지 아니하고 납세관리
인을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통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호 서식 :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한 때에 납세자권리현장을 함께 교부

※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3호의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에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2호)

마.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시 기

- 지방세의 범칙사건 조사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2) 조세전문가의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는 자
 - ※ 국세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한한다.

3) 조력의 범위 - 보조행위

- 조사 시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 하거나 「의견을 진술」
- 납세자를 배제한 채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대신 받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 납세자의 진술이 없이 조세전문가의 의견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다.
-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 진술할 것을 요구(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배제)

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1) 원칙 : 모든 납세자는 성실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
- 2)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 납세자가 지방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 협력의무 불이행시
 - 장부기장·보관의무, 각종 신고서류 제출의무, 개업·폐업 시 신고의무 등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납부, 제조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의무 불이행시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 취득 시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등)

3) 성실성 추정 범위

-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
-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의 진실성 추정

4) 효 과

- 성실성이 추정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1) 사전통지

가) 시 기

-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 송달
- 범칙사건 조사 시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멸실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
※ 사전통지를 생략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나) 상 대 방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다) 방 법 : 서면 → 세무조사통지서 (별지 제38호 서식)

라) 통지내용

-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 상호, 주소(거소)
-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2)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가) 연기사유

- 천재·지변
-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상기에 준하는 사유

나) 방 법 : 서면 → 세무조사연기신청서(별지 제39호 서식)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 상호, 주소(거소)
- 당초조사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다) 처 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연기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조사연기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연기를 허용하되
-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별도 서식 없음)

3)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가) 시 기 :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가급
적 1주일 이내)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

나) 방 법 : 서면 → 세무조사결과통지서(별지 제40호 서식)

다)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52조④)

- 납기 전 징수의 사유(법 제26조 제1항) 발생시
 -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라) 통지 시 유의사항

- 납세자에게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동봉하여 송부한다.

아.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

1) 과세정보의 범위

-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2) 정보의 제공

- 원칙 :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세부과 징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공범위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에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서면
 - 신청 시 기재사항
 -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자에 한정함

○ 처 리

-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되, 공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행
- 법령에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요청 시는 거부

3) 처벌사항

- 대 상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지방세 부과징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공무원

※ 공무원 간주 :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공무원으로 간주

- 벌 칙(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 : 10년 이하 징역
- 개인정보의 누설, 타인에게 제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제공받은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사례] 지방세 준용규정과 과세자료의 제공범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법률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함이 불가하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행자부 세정-315, 2004. 3. 6)

[지침] 금융기관 정보조회 비용 적용지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 7. 30. 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우리부와 전국은행연합회와의 협의사항이며, 특정점포에 요구하는 체납액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에도 준용하되, 조회대상이 소규모(1백건 이하)인 경우 우송료 지급 시기는 해당점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함(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때 등)(행자부 세정- 2542, 2004. 8. 16)

- 조회사실 통지에 관한 우송료 : 건당 2,000원

- 우송료 지급시기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침] 금융거래정보관련 수수료지급기준(행자부세정-4096, 2004. 11. 16)

지방자치단체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 보전과 관련사항임

가. 지급비용 : 건당 2,000원

나. 지급시기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지급방법 : 새마을금고(본점)별로 지급

라. 기타사항 : 조회대상이 소규모인 경우 지급시기 등은 해당점포와 개별협의

자. 납세자보호관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가. 근 거

- 지방세법 제70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관련 조례

나. 내 용

-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의 일종이다.

※ 국세의 경우 고지 전 심사제 → 과세적부심사제도로 전환 시행('96.4.18)

다. 청구대상 및 적격자

1)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법 제70조①)
- 과세예고통지(법 제70조①)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시행규칙 제36조의2)
 - ※ 농지등급 결정 또는 수정사항에 대한 개별통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게 되며(시행규칙 제85조의2), 과세적부심사대상이 아니다.

2) 청구적격자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과세처분이전 과세예고 등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청구적격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격자에서 제외(심사제외 결정대상)
- 대리인을 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 ※ 대리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한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는 일치하지 아니함

라.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1) 청구기한

-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권자에게 있음(대판 96누3562, '96. 6. 28 참조)
- 기산일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 반려통지를 받은 날
- 방 법 : 서면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청구기관
 - 시·도세 : 시·도지사
 -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2) 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마. 심사방법

1)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시·군·구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시·도 → 지방세담당국장
- 위 원 :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운영 :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함

2) 심사결정 방법

- 심 의 :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결정내용
 - 『채택』 결정 :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불채택』 결정 :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등 기타 심
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
- 결과통지 : 서면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
41호의2서식)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음

※ 과세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절차로 구제

바. 기대효과

-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 부여
-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신청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지방세 부과체척기간이 경과 되면 과세적부심사제외결정을 하거나 심사를 중단한 후 우선과세 처분을 하고 사후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수정신고 납부제도

가. 의 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나. 유형(類型)

1) 본래적 의미의 수정신고납부제도(법 제71조)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신고 납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수정하여 신고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써 수정신고납부 시 추가납부하게 하거나 환부처리 하는 것이다.

2) 수정신고납부제의 특례(법 제177조의 3)

신고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 적용범위

1) 대상세목

- 지방세 중 신고납부 하는 세목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소득할, 농업소득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등
 - ※ 부과지 하는 세목은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절차를 통하여 구제

2) 적격자 :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 자이므로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입하더라도 적격자의 대상에서 제외(예 : 주민세 특별징수분, 도축세)
-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법인합병 시 존속법인, 포괄승계 시 포괄양수인도 수정신고 납부 가능
-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음 (예 :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만 적격자 대상이 됨)

-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시 재수정 신고 납부도 가능

라. 수정신고의 사유

1) 후발적 사유 : 신고납부한 이후 발생한 사유

- 공사비의 정산
 -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추후에 공사비가 정산이 된 경우
 - 조성되는 토지의 경우 조성토지공사가 완료(형질변경 등 공사완료)되어 공사비가 정산되는 경우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이 완료되어 취득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 ※ 건설자금의 이자 범위(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 확정판결
 - 신고납부 이후 확정판결 등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예) 주민세 신고납부이후 소득세·법인세의 경정 확정판결로 기납부 세액이 변경된 경우 등

2) 부득이한 사유 :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

- 증빙서류의 압수 등
 - 법인이 신고납부당시 취득을 입증하는 법인장부, 각종전표 등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세무서에 압수·영치
- 법인의 청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마. 수정신고의 방법 및 절차

1) 수정신고방법

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납부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미납부시에는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부과
 -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시행령 제53조)
 - ①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 ②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 ③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 ④ 법인의 청산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나)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

2) 수정신고절차

가) 수정신고 시·군 :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

나) 방 법 : 서면(수정신고서)으로 신청(별지제41호의3 서식)

※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처 리

○ 과오납부세액이 있을 때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즉시 환부

※ 환부이자는 수정신고 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

○ 과오납부세액이 없을 때 : 과오납부 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

○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 수정신고 납부

※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오납부 세액이 없다는 뜻을 공문으로 통지

바. 가산세의 부과 및 환부이자의 지급

1) 가산세의 부과

○ 수정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 가산세 부과 제외

-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단 신고 납부하고, 수정 신고납부기한 내(60일 이내) 추가신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수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 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예 : 취득세의 경우 20% 가산세 부과)

2) 환부이자의 지급

구 분	수정신고납부기한 내	수정신고납부기한경과 후
추 가 납 부	가산세 제외	가산세 부과
초 과 납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세 : 환부 ○ 환부이자 : 수정신고납부일 익일부터 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세 : 환부 ○ 환부이자 : 추후신고납부일 익일부터 기산

※ 다만,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부세액이 과오납금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과오납인 경우에는 환부토록 함

- 수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 수정신고에 따른 권리구제, 소멸시효 등

1) 권리구제

가)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대판 86누199 86.12.23 : 흡수설)

- 당초신고납부세액 : 불복청구기간 경과 시에는 불복대상에서 제외
- 추가신고납부세액 :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포함하여 불복청구 가능

※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신고납부는 수정신고의 일부에 흡수되기 때문

나) 초과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대판 85누599 87.12.22 : 병존설)

- 당초신고납부세액 : 별도의 불복대상
- 감액결정세액 : 별도의 불복대상(감액결정부분만)

※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초과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납부 된 범위 내에서(감액결정 범위 내)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

2)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가)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수정신고납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5년 계산
- 나) 초과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당초 신고납부일 익일과 수정신고납부일 익일부터 「각각」 기산하여 5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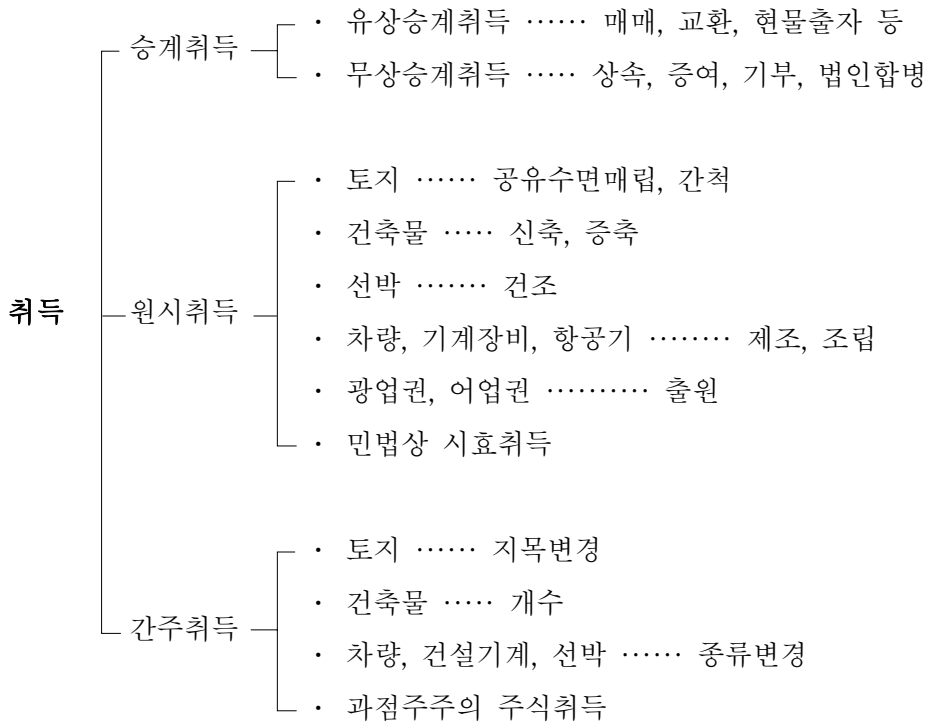
제2장 지방세의 종류

1. 취득세

가. 취득의 개념

1) 취득의 의의

-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법 §104 제8호).



나. 과세대상

○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의 취득

○ 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

-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부수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 개념배제)
-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
- 토지의 지목 변경
-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당해 법인 부동산 등

1)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 토지 :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28개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유원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나) 건축물 : 건물 + 시설물 + 부수시설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

- 건 물 : 지붕 + 벽 또는 기둥
- 시설물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 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 부수 시설물 : 열거주의채택(승강기 등 9종) 단, 건축물에 부착, 부합된 것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 20Kw 이상의 발전시설
- 난방용 보일러, 목욕탕용 보일러
-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 방식에 한함)
- 부착된 금고
- 주유시설 및 가스 충전시설
- 교환시설
-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

(※ Intelligent Building system. : IBS)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법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OA, BA, 시설 등>

※ 취득시기 :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 시

<건축법시행령 §2① 3호 규정의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3의2 규정의 대수선의 범위>

-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②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③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④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
- ⑧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2003. 2. 24 개정)

2) 차 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3)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선박, 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 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5) 입 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6) 어업권, 광업권

- 광업권 :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7)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콘도미니엄의 범위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이 포함됨에 따라 호텔업의 경우라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원권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함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례] 사용기간이 있는 골프회원권의 취득 판단

사용기간이 정하여진 주중(평일)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회원권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와 함께 동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상기 주중(평일)골프회원권이 소멸된 후 다시 사용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이는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행자부 세정-1054, 2005. 3. 8)

[사례] 저유조에 대한 과세 범위

저유조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 옥외저장시설, 나. 저유조에서 유류(휘발유, 경유 등),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암거인 저장시설의 암벽은 탱크의 칸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벽터널은 지하수가 공급되어 외부와의 수압유지, 누수방지 등 외벽 철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하암거내의 개소별 시설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저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할 것이고 공구별로 설치된 수벽터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암거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산정기준은 저장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공구별 용량(귀문의 경우 병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366, 2006. 4. 4)

[사례] 대수선공사와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건물의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화장실내 타일, 칸막이, 천정 텍스 등의 교체와 건물내 기존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해 공사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행자부 세정-837, 2006. 2. 28)

[사례] 클린룸의 과세대상여부 판단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판례(92다43142, 1993.8.13 판결)를 고려할 때 공장(건축물)신축 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행자부 세정-2, 2007. 1.2)

다. 납세의무자

1)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및 건축물의 개축 또는 증축한 자.

[사례] 리콜제 콘도미니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판단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입회계약서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2년 이상에 걸쳐 입회금이 지급되도록 연부취득형식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그 계약자가 당해 콘도미니엄을 입회계약서상의 시설의 관리 및 이용, 회원권의 양도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10년간 사용하다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리콜제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이나 중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회원권의 본질인 특정시설물의 배타적 이용, 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당해 콘도미니엄회원권 계약시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그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3430 - 337, 2001. 9. 15)

[사례] 실거래신고 취하지 지방세 납세의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7.24일자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30일) 내인 2006.8.16일자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거래 신고를 취하(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교부)한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 2006-333, 2006.7.31 참조)(행자부 세정-2994, 2006. 8.28)

[사례] 이삿짐 차량에 대한 수입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제5항과 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73조제9항규정은 수입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재산의 국내 반입은 수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5구합 7673,2005.6.23)이 확정됨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이사물품으

로 국내에 반입되는 자동차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163, 2006. 3. 22)

[지침] 외국으로부터 이삿짐 반입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행자부 세정-111, 2005. 4. 1)

종 전	변 경
<p>이사화물을 수입신고 시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동반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해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반입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아닌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 의자와 실질수입자(단, 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를 각각 취득세를 과세함(행자부세정-1054, 2004.5.6)</p>	<p>이사화물을 수입신고 시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동반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해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반입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아닌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 의자를 실질수입자(단, 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로 보아 취득세를 한번 과세함</p>

2) 의제(擬制) 납세의무자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취득 이후 기부채납 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 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함

나) 그 밖에 의제 납세의무자

- (1) 토지지목의 사실상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 및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국유지상의 골프장 조성공사의 경우 납세의무 문제)
- (2)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비록 주체 구조물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예 : 리스 회사의 승강기 대여설치)
- (3) 주택조합(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포함)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

[사례] 당초조합원 지분변경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재건축조합원납세의무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2007.8.24)에 조합원이 조합원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것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일반분양 할 경우에는 원시취득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이 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를 재건축조합이 다시 납부해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3968, 2007. 10. 1)

다) 과점주주의 취득

(1) 의 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또는 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과점주주의 개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인 자

[지침]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비율 전체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판결(2007두10297, 2007.8.23)에서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함(행자부 세정-3632, 2007. 9. 6)

[판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군)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판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전으로 과점주주인 경우 내부거래로 보아 전체로서 과점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

니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일반인이 주식을 51%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판단

법인의 주주로부터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주식거래 또는 증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B법인과 C법인에 있어 각각 주주인 甲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乙·丙·丁개인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B법인과 C법인이 甲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乙·丙개인과 같이 A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으므로 A법인에 있어 주주인 甲·乙·丙개인과 B·C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A법인의 주주인 甲개인의 아들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거나 甲개인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여 그 아들에게 이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3338, 2007. 8. 21)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례에 의거 해석이 변경됨

(3) 취득세 납세의무

1.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으로 간주
2.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만을 적용하여 산출, 다만, 증가된 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과점주주가 주식의 매도, 법인의 증자 등으로 일반주주로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증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적용하여 산출
4.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과세표준)	(과점비율)	(세율)
법인의 자산중 취득세 납세대상 재산의 증가액	× $\frac{\text{과점주주가 소유한株式 또는 出資金額}}{\text{法人의株式또는 출자금액}}$	× $\frac{20}{1,000} = \text{稅額}$

※ 증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의 장부 등에 의 한 가액

※ 법인의 장부가액 :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한 경우 그 가액

(5)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

(6)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착하였을 경우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 없이 과세자료를 통보

(7) 비과세 및 감면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부분은 과점주주에게도 비과세 및 감면

[사례] 과점주주 쟁점별 과세운용요령(행자부세정13430 -392, 2001. 10. 4)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

-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적용 문제는 대법원 판례, 심사결정, 유권해석이 서로 상이하게 결정되어 일선 지방세 운영에 혼선 초래

우리부 유권해석 사례	심사결정	대법원 결정
- 비과세·감면대상 인정 (내무부 세정1268-5664, 1981.4.11)	- 비과세·감면대상 불인정 (내무부 심사97-99호)	- 비과세·감면대상 불인정 (대판99두6897, 2001.1.30)
- 비과세·감면 불인정 (행자부 세정13430-290, 1999.3.10)	- 비과세·감면대상 인정 (행자부 심사) ※ 감사원 심사결정은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인정(감심 제349호, 1999.11.23)	
- 비과세·감면대상 인정 (행자부 세정13407-993, 2000.8.10)		

※ 대법원 판례 : 대판99두6897(2001. 1. 30)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보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향후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운영하되,
 - 다만, 구법 시행시기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비과세·감면처분 판단 받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추정할 수가 없음

명의신탁해지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주식의 명의신탁해제에 대하여 그간의 우리부 해석사례는 새로운 취득의 일종으로 과세를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과점주주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함 (내무부 세정13407-1071, 1996.9.19)	-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를 개선하더라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 (대판98두12161, 1999.12.28)

※ 우리부 심사결정(제2001-251, 2001. 5. 28)도 대법원 결정과 동일함에 따라 유권해석(세정13407-702, 2001. 6. 23)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변경

-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 소유명의를 실질 소유자가 회복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권리의 인수자는 새로운 취득의 경우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대법원 판례, 지방세법운용세칙 제 107-1조 참조)으로 보는 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논리모순이 있는 것임
-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는 1998. 12. 31까지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명으로 개서되는 부분으로 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토록 함

◀ 적용요건 ▶

-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상속·증여세법의 시행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할 것
- ②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 ③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일 것

과점주주와 중과세 세율 적용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은 과점주주 당시의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일정비율 취득한 것으로 보며, 중과세대상물건이 있는 경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중과세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세율 적용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중과세 세율 적용을 하여 「과세물건기준」으로 중과세 세율 적용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으나,
 -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주주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세율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입장
- 당해 주식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임 (행자부 세정13430-259, '99.2.27)	- 법인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고법98누12392, '99.6.2)

-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세율 적용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중과세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과점주주의 범위와 과세근거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는 것이며, 과점주주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함
- 이때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이어야 하나, 동조문 체계에 있어서 연계성이 없어 비상장법인의 주주여부가 불명확함
 - 즉,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22조제2호를 인용한 것이므로 제22조 본문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포함여지가 있음
 - 이는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을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이고, 동조제2호 규정은 과점주주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 한정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골프장 증과세 적용 판단

회원제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증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비록 A가 甲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甲법인이 소유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여 A가 甲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다거나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인 A에 대하여 취득세를 증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1031, 2007. 4. 4)

- 과점주주의 경우 기존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증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대상물건의 중과세 적용 판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 중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과 과점주주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1185, 2007. 4. 12)

-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대상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사치성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 중과세 되나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할 수가 없음

[판례]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적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2000두 3375, 2001.9.4.)

[판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관련 합헌결정(헌법재판소 결정 2005헌바45 , 2006. 6. 29)

[사례] 과점주주의 내부거래시 납세의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귀 문의 흥00, 이하 A)가 과점주주(55%)인 특수관계인(남자형제, 이하 B)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55%)가 된 경우라도 A와 B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이상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행자부 세정-5620, 2006.11.14)

[사례] 과점주주의 리스물건 납세지 판단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대상 물건의 사용본거지 미확정 또는 리스이용자가 임의로 과세대상 물건의 사용 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납세지별로 수정신고 대상임 (행자부 세정-3079, 2006. 7. 18)

라. 취득의 시기

1) 유상 승계취득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취득일 판단

민법 제487조 전단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9조제1항에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4.3.19. 매매대금의 잔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거래허가일인 2005.3.18.이 된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4718, 2007. 11. 12)

[판례]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사례] 일반분양분 조합토지의 취득시기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되,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종료일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2004.6.28) 및 질의회신 세정과-4624호(2004.12.16) 등 참조] 로서, 갑설(신탁등기 종료일)이 타당함(행자부 세정-889, 2006. 3. 3)

- 이 해석은 법제처 해석으로 변경되었음

[사례] 신탁용 조합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와 신고방법

종전까지는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자기 책임아래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분양하고, 피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조합의 일반 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신탁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였으나, 2006. 6. 19일자로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49(2006. 6.12)]에 의거 일반 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신탁등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조합이 주택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며,

일반분양용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2006.6.1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신탁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그 이후는 주택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승

인을 받은 때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2006.6.19 이전에 신탁등기가 종료된 경우라도 행정소송 등 지방세 구제절차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일반 분양용 토지의 면적 등이 확정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2926, 2006. 7. 12)

- 기존의 해석사례와 심사결정사례를 변경한 것임

[판례] 사실상의 지목변경 시기 판단

지적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지적법 제2조 제7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73. 2. 6.경 위 00건설이 임야에서 골프장시설지인 잡종지로 개간하여 준공한 이후 원고가 2001. 7.경 이를 취득할 때까지는 사실상 대지와 같이 형질변경 된 주거나지 상태의 잡종지에 불과할 뿐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 및 준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후 2003. 5. 14.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써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5두12756, 2006. 7.13)

[판례] 잔금지급여부와 등기시 취득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

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사례]명의신탁해지와 취득시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9311,2002.7.12 참조)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4697, 2006. 9.26)

[판례] 수입에 의한 취득시 취득시기 판단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 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우리나라에의 인취일이라 할 것이니 그것들 중 먼저 도래한 때를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선박의 잔대금을 완급한 때 또는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취득이 있었다고 보고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는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인

취된 때에 한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바 못된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295 판결)

- 선박 등을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나 수입하는 날 중 빠른 날을 보아야 함

[사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취득일 판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6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7다8427,1997.11.11 / 감사원 감심 2001-130, 2001.10.30 참조)(행자부 세정-6096, 2006. 12. 6)

[사례] 교환취득 시 취득시기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A가 B소유부동산을 교환받기 위하여 지급한 잔금인 보충금이 교환계약서상에서 확인이 된다면 교환계약서상의 보충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행자부 세정-4150, 2005. 12. 7)

- 교환취득의 경우 교환일을 판단하여야 하나 이는 보충금이 지급된다면 취득일은 보충금지급일이 됨

[사례]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판단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제73조제1항 제2호 단서“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락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그 해제 입증사실의 신고는 30일 이후에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행자부 세정13407-425, 2001. 4. 16)

2) 무상 승계취득 :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유상, 무상 승계취득 및 연부취득의 경우 : 그 취득일전에 등기 등록 시 그 등록·등기일이 취득일.(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 건조의 경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빠른 날

4) 원시 취득

○ 건축허가된 건축물 : 사용승인서교부일.(다만,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 무허가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일을 취득일

[사례] 미준공건물에 대한 보전등기시 취득시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이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축주의 취득일이 되는 것(행정자치부 세정과-1735, 2004.6.25. 참조)이고, 경락자는 매각대금 완납일(건축주가 원시취득하기 이전에 대금완납 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315, 2007. 6. 18)

[사례] 건축 중인 건물의 보전등기시 취득일

“을”법인 명의로 건축공사 진행 중 공정을 70%의 상태에서 “을”법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을”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때(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을”법인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행자부 세정-351, 2007. 2.24)

[사례]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에서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 존치기간이 2002. 9. 13. ~ 2005. 2. 28로 되어 있더라도 2004. 2. 7.이 실제 완공일 이라면 이로부터 존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1755, 2004. 6. 28)

[사례] 가설건축물의 취득여부와 개수의 범위

지방세법 제110조제5호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축물의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존치하는 컨테이너(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면 이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 되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 참조) 한편 지방세법 104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내·외부 도장 등은 단순한 수선(수익적 지출)의 일종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행자부 세정-1501, 2004. 6. 8)

5) 연부취득

- 시기 :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채무를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임.
- 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을 경정계약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정계약 시점에서 당초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경정계약자가 매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납부

-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계약서상 연부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최초 연부금 지급일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판례] 연부취득의 사실상의 취득시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6)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날.(다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

[사례]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이 그 취득일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농지전용과 같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한 때에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7)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

공사 준공인가일, 그 이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허가일

8) 수입에 의한 원시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수입에 의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판례] 실수요자의 범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

[사례] 선박의 취득시기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우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한 잔금을 2001.8.2 완납하고 2001. 8. 3 미국 하와이에서 인수한 후 2001년10월 국내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의 취득 시기는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로, 당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수입통관서의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3407-305, 2001. 9. 8)

마. 과세표준

1) 원 칙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가액. 다만, 연부 취득 시에는 연부금 또는 사실상의 지급액

2)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가) 적용 대상

-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의 취득
 -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포기 또는 인락,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

[사례] 빌트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범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의 취지 및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건축설계에 반영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분양되는 빌트인 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6-1126호. '06.12.27 ; 제2007-78호. '07.2.26)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행자부 세정-1230, 2007. 4. 16)

[사례]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범위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권리가격만을 신고하고 입주권, 분양권은 별도 표기하지 않았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07.6.29부터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 취득을 위한 종전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실제 거래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에 따른 입주권 취득시 수반되는 종전 토지거래신고시 종전 토지가액(권리가격)에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합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함(행자부 세정-4259, 2007. 10. 18)

[사례] 문화재발굴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문화재 발굴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므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257, 2006.7.25) (행자부 세정-4565, 2006. 9.20)

[사례] 검증을 받지 아니한 거래의 과세 표준 적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당해 토지의 실거래가신고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 “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실거래가신고가액을, “적정”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86, 2006. 1. 17)

[사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 범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 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95누4155, 1996.1.26 참조)으로서, 법인이 차량을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자동차판매회사에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8,000,000원)은 할부금융업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서 당해 차입금(8,000,000원)과 이자(1,000,000원)를 할부금융업자에게 분할상환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 이자(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773, 2006. 5. 2)

[사례] 전기인입비용의 과세표준 적용 범위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신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분담금, 도시가스분담금이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52, 2001.5.28 참조)(행자부 세정-1850, 2006. 5. 9)

[사례] 학교용지부담금의 취득세 과표 산정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가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 ·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429, 2005. 1. 26)

[사례] 사실상 장부가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입증방법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92누15895, 1993.4.27)하고 있으므로 (주)00건설이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을 할 당시에 장부기장상 오류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2005년도 회계에서 실제 대물변제

가액으로 정정 처리한 것이 서울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서 및 장부로 볼 수 있는 원장 등에서 입증된다면 이를 정당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행자부 세정-3604, 2005. 11. 4)

<건축물 원시취득 비용 사례>

구 분	과세표준액에 포함여부
건본 주택 건축비	○ 존속기간 1년 초과여부에 따라 별도과세 객체로 판단(법 §107,6호)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 (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	○ 건축비용이 아닌 건축물판매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
관련조세(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공사 현장의 종업원할사업소세, 인지세)	○ 건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영 §82조의3 ①)
비품 구입비	○ 건축물과 분리된 것(분말소화기, 신발장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블랙이장등)은 과세표준에 포함

나)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범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써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판례]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서류의 범위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00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서나 문답서 자체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각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두18031, 2007. 10. 26)

[사례]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과표 포함 판단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판결 95누4155, 1996.1.16. 참조) 하겠으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승계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대금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별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521, 2007.11.1. 참조), 경락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경락대금 완납)한 이후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4745, 2007. 11. 13)

[사례] 상가임차금액의 과표 포함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승계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대금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편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당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물권)로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별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금을 지급하거나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521, 2007.11.1.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441호, 2005.9.26. ; 심사결정 제2004-135호, 2004.5.31. 참조), 경락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경락대금 완납)

한 이후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4716, 2007. 11. 12)

[사례] 대물변제시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범위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이 대물변제계약을 작성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6천8백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방법원에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조정조서를 받아 신고한 금액인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은 대물변제계약서상의 6천8백만 원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됨(행자부 세정- 12, 2004. 1. 3)

[사례] 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이라면 이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이 개정(전문개정 2002. 1. 26,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2790, 2004. 8. 301)

[지침] 실거래가신고제시행에 따른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요령(행자부 세정-12006. 1. 2)

○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5호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가액 중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

해서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므로 2005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이 2006년도에 도래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1.1이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2005년도 계약체결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신고가액 중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부적정, 판정보류 또는 판정불가」로 나왔을 경우에는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

○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3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3) 시가표준액의 적용

가) 적용 대상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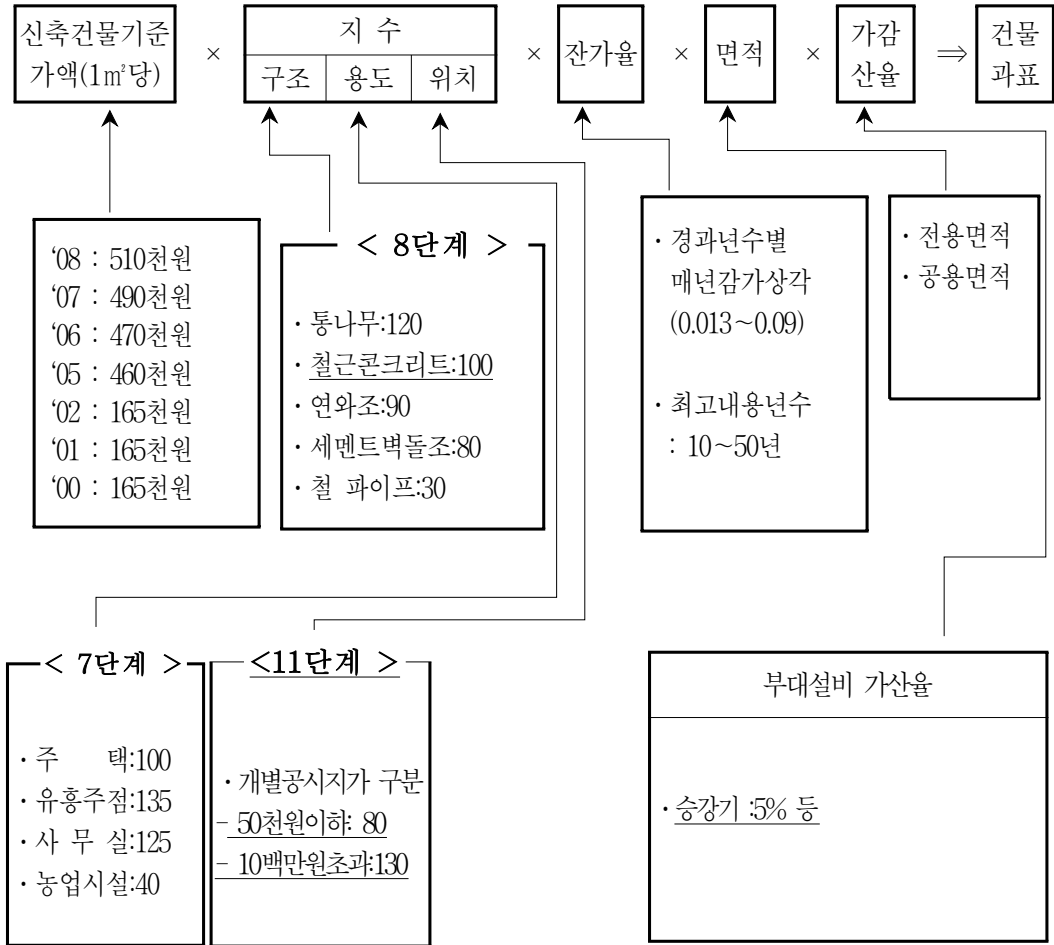
나)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범위

① 토지 및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활용하여야 한다.
-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② 주택이외의 건물

<건물과표의 산출구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51만원/m²)에 각종지수 및 잔가율과 부대설비가산율을 적용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 기준을 정한 후 종전에는 시·도에 권고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과표 통일 적용을 위해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과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례] 천막, 컨테이너에 대한 지방세 과세대상

천막 및 컨테이너건물에 대한 세액 산정 시에는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00) 등 다른 재질로 축조된 건물보다 낮은 지수(철 파이프조의 구조지수: 30, 컨테이너건물 구조지수: 40)를 적용하는 등 건축물의 재질에 따라 적절한 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행자부 세정-492, 2004. 3. 17)

- ③ 차량, 선박, 항공기, 입목,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가격.
- ④ 증축 또는 개축
일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 시가과세표준액
- ⑤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소요비용이 입증 될 때에는 그 소요비용)

[판례] 지목변경에 따른 과표 산정기준

지방세 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

한 경우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란 지목 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란 지목 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07두12163, 2007. 9. 6)

다) 주택가격신고지역 내 과세표준 적용

주택거래신고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만 주택거래신고가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사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과표적용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660, 2005. 7. 14)

바. 세 율

1) 일반세율

-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의 20/1,000

2) 중과세율

가) 사치성재산

일반재산의 5배인 100/1,000

나) 대도시내의 신·증설공장

일반재산의 3배인 60/1,000

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일반재산의 3배인 60/1,000

사. 중과세 재산의 범위 및 세율적용 등

1) 사치성 재산

가) 별 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12조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봄.

이 경우 별장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범위는 규모나 가액 및 위치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별장에서 제외하는 것임

[판례] 별장의 요건과 판단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 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축물은 한00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북 임실 지역에 방치되어 멸실 위기에 있던 전통가옥을 1980.경 이축 복원한 건물인 점, 한00와 원고는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과 토지에 한00가 수집한 다량의 미술품들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28,954㎡인 반면, 이 사건 건축물은 2동을 합하여 190.04㎡에 불과하여 한00가 별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00는 전시시설 부지의 용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특별한 건축구조의 변경 없이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로 용도가 바뀌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할 당시에 도 사실

상의 현황은 공부상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위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은 산과 밭 등으로 특별히 경관이 수려한 곳은 아닌 점, 전기사용량과 전화사용요금이 행랑채에 사는 관리인 가족이 한 달에 사용하는 양으로 수공이 가는 점, 싱크대와 욕실 등이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전시설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운영자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할 수도 있는 점, TV, 라디오, 에어컨 등의 휴양을 위한 전기제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주된 용도가 별장이 아닌 문화재나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두4806 , 2006. 6.29)

○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시행령§84의3)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 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판례] 별장용 건축물 해당여부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 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94누 8280, 8297, 1994, 11.11)

[사례] 오피스텔의 별장여부 판단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고객상담 및 주중에는 대표이사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행자부 세정-5973, 2006. 12. 1)

나) 골프장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건축물 및 입목
 -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때를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범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 2004. 7. 1을 취득일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사례] 사실상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골프장을 조성중인 상태에서 코스와 조경계획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하고자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들을 초청하여 요금을 받지 않고 코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71, 2005.9.14. 참조)고 사료됨(행자부 세정-2509, 2007. 7. 2)

다)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롯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 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림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기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판례] 유흥주점에 대한 증과세 대상 요건과 사실상 영업 판단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증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취득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할 것이고,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 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 11889판결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 3.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1, 2층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당시 비록 건축물대장상이 사건 건물 1, 2층을 일반유흥음식점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1, 2층에는 여전히 이정재 명의의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속한 상태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나) 원고는 이정재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2005. 4. 7. 잔금지급일 이후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카드거래 승인내역이 종전의 외상값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3, 1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카드거래 승인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 1, 2, 3층은 층별로 별개의 영업허가 아래 따로 운영되고 있었

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호 및 영업허가 아래 운영되는 단일 사업장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다) 원고는 이00로부터 2005. 7.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차 부분을 명도 받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3층에서는 서00이 이00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 2층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1931)-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23670 판결

-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는 유흥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영업영위여부는 카드거래 내역등을 감안하여 판단

[판례] 유흥주점영업장소의 범위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유흥주점(스탠드바)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21.50㎡이 미치지 못하여 영업장의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이 사건 주점의 영

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 주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5두197, 2006. 3. 10)

-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무도장이 있더라도 무도장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례]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적용 판단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유흥주점 영업장 511.92㎡중 춤추는 공간인 무대가 21.50㎡에 불과하다면 이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5두197, 2006.3.10)를 감안할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제5호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 378.92㎡ 중 연주 무대와 춤추는 공간이 15.6㎡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라면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 규정에 의한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1920, 2006. 5. 11)

[판례] 유흥종사자의 범위

1.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 티

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이른바 “티켓비”)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한 경우, 그 티켓걸을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업소주인이 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5도3801, 2005. 7. 27)

2.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관련 식품위생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2005도9114, 2006. 2. 24)

-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되지 아니한 수시 유흥종사자도 유흥종사자에 해당함

[사례] 주류판매여부와 증과세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장 내부에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석이 있다면 주류를 판매하거나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무도유흥주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재산세 증과 대상이 타당함(행자부 세정-3909, 2006. 8.24)

[사례] 노래방의 불법영업에 대한 증과세 적용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100분이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증과세 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이 된 때에는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제3자가 임대하여 노래방 허가를 받았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3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추정대상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3844, 2006. 8.21)

[사례]

- ① 기존의 고급오락장을 폐쇄하고 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이전한 경우에도 고급오락장 전체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함이 적법함.(서울고법 809구 585, 1981. 4.1)
- ②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 중 그 내·외부 시설이 업무용보다는 휴양에 적합하며 그 개별실이 상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
- ③ 1구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1필지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사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범위 판단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급오

락장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연접한 토지에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후문 출입구가 맞닿아 있어 고급오락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접한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72, 2005. 12. 21)

라) 고급주택(주택과 대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고급주택으로 보는 면적, 가액, 부대시설의 기준]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

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하
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
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2004. 1. 1.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판단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1개 층의 면적
이 245㎡를 초과하더라도 제외하지 아니한다.

[판례] 고급주택의 취득일과 용도변경공사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등 등 내부 집기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빨리 잡
아도 2004. 1. 26. 이후에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철거공사에 착
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그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
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고급주택인 주
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

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이 위 법리상 명백하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고 원고의 종국적 목적이 고급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용도 전용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으며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날’을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6두1524, 2006. 4. 27)

[사례] 개인간 거래시 고급주택의 감면 적용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12조제1항 규정(1,000분의2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3249, 2006. 7. 25)

[사례] 고급주택의 중과세 적용 요건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대법원93누7013, 1994.2.8)이며, 대지면적 중 담장 밖 토지는 건축신고서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에서 도로로 진출 · 입 하는 다른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담장 밖에 있는 주차장 및 전용진입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감사원 심사 제113호, 2004.9.16)임(행자부 세정-713, 2005. 2. 14)

[사례] 고급주택의 범위

① 고급주택에 해당여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에 해당됨. 다만, 건물의 일부가 점포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됨.

② 주택 보호를 위해 주택주변 경사지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옹벽을 설치하였다면 옹벽의 바닥 면적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고 있는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옹벽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상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431, 2004. 8. 10)

- 법면토지는 당해 토지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옹벽부분이 당해 부속토지의 면적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마) 고급선박

시가표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

사) 중과세 세율적용

- (1) 사치성재산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
- (2)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 (3)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고급주택은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

3)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가) 정 의

(1) 대도시(영 제84조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2) 공장(규칙 제47조①)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은 제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비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

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 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소·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3) 적용기준(규칙 제47조②)

법 제112조제3항 및 영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 ①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을 증설할 경우에 한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건설기계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㉕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③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㉖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㉗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 ㉘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건설기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4) 공장의 승계취득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②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비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를 의미함.

(5)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6) 공장의 업종변경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례] 공장 신·증설의 범위

- ①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3누 12282, '94. 4. 26)
- ② 공매에 의한 공장 취득의 승계취득 해당여부 공매에 의하여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 배제함.

나) 공장 중과세 요령

- (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과세
- (2)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건에 비하여 증가된 부분(면적 또는 수량을 말함)에 대하여 중과세

- (3)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것인 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취득임이 확인된 때에는 중 세액에서 일반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징. 다만,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공장 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공장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례]

①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 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 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

②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4)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가) 범 위

①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적인 중과세('92. 1. 1 시행)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

나)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별표1] 참조

[사례]

①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본점의 경우

- 도시형업종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의 경우
- 임대한 토지상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를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
-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②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 병원의 병실을 증축취득하는 경우
- 운수업체가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판례] 본점사업용부동산 제외범위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복지후생시설은 법인의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시설이 통상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연수 또는 체력단련 등 후생복

지시설임이 명백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이 복지시설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현황보고서에 이 사건 건물 중 11층 764.90㎡가 대강의실, 13층 683.10㎡가 기공실, 14층 233.10㎡가 체력단련실, 16층 468.81㎡가 역사관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체력단련실의 경우 런닝머신 등 운동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① 대강의실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A/S,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연수시설로 일시 사용된 듯하기는 하지만, 한편 주고객인 치과의사, 기공사,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치료방법, 치과기재, 의약품, 의료용구 사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강의실이 주로 원고의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직원들만을 위한 연수시설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기공실의 경우, 이 시설이 직원들의 연수만을 위하여 설치되어 직원들이 연수를 받아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12층(신규개원실)에서 직원들에게 원고가 수입하는 각종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교육하면서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공실 역시 직원들외에 기공사 등을 상대로 의료기기 사용법을 소개하는 등의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고 보이고, ③ 역사관의 경우에도 16층 일부에 치료기자재, 관련서적을 전시하여 둔 것뿐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연수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과 9층을 주사무실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직후인 2001. 3.경 이미 그 일부에 대하여 임대를 내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역사관이 원고 직원들의 연수나 복지후생시설로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원고 회사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사무실 면적을 확보한 원고가 그 일부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대강의실, 기공실, 역사관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연수 또는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체력단련실에 관하여서만 이유 있다. (대법원 2007. 8. 20, 2007두11603)

5) 사치성 재산 등의 신고납부(법§112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납부함.

가) 사치성 재산 (영 §86-3)

-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수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 (2) 골프장은 등록일(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일. 그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 이미 임시 사용 중인 경우에는 2004. 7. 1에 사실상 사용의제
- (3)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4) 고급선박은 종류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날

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기존 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예시] 법인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경우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소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그 법인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때에는 건물 및 토지 모두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영 제8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가산세는 제외)

6)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법 §121)

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함.

-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한 가산율(1일 10,000분의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시] 적용례

- 납부세액 100만원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20일 경과 후 부과지 시 가산세액의 산정

$$[100\text{만원} \times 20\%] + [100\text{만원} \times (3/10000 \times 120\text{일})] = 20\text{만원} + 3.6\text{만원} = 23.6\text{만원}$$

$$\text{총납부세액} : 100\text{만원} + 23.6\text{만원} = 123.6\text{만원}$$

- 납부세액 100만원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20일 경과 후 고지 전 기한후신고시 가산세액의 산정

$$[100\text{만원} \times 10\%] + [100\text{만원} \times (3/10000 \times 20\text{일})] = 10\text{만원} + 0.6\text{만원} = 10.6\text{만원}$$

$$\text{총납부세액} : 100\text{만원} + 10.6\text{만원} = 110.6\text{만원}$$

※ 헌법불합치판결(03. 9. 25) 이후 지방세법개정시행일(04. 1. 1.) 이전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를 한 경우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 후 2년내 신고 납부 없이 매각한 때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단, 다음 경우는 제외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 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 물건
- 취득세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제외)
- 지목 변경, 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 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아. 부과·징수

1)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법 §105)에서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 49호의3서식에 의거 등록지에 신고납부 할 수 있음

2) 부과징수방법

가)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다만, 상속재산의 경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

※ 실종신고로 취득하는 경우 실종신고일로부터 6월(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9월)이내

나) 기한 후 신고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요건은 첫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 할 것, 둘째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받기 전이어야 함

다) 보통징수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재산 : 6월 또는 외국 9월)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 이 경우 납세고지서의 납기는 15일 이내임.

3)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4) 관계서류의 통보(법 §118)

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 포함)한 때에는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함

- 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포함)
- 기타 상기기관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시장·군수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 16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세무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영 §85②)

자. 비과세 및 감면

1) 비과세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법 §10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다만,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해당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례] 외국인간단체에 대한 비과세 적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나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간단체인 경우에는 국제기구로 보아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행자부 세정-4363, 2007. 10. 23)

- 국제기구의 범위에는 국제연합, 정부간 국제기구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함으로 민간외국단체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기부채납부동산에 대한 추정 판단

교육청에 유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고시 된 부동산을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아 기부채납을 위해 신탁등기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 변경결정고시를 함으로써 귀사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청의 사정변경에 의해 부득이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고시 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원소유자로 원상복귀 함에 따라 결국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취득세 등을 추정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2078, 2005. 8. 8)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법 §107)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④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한센복지협회
-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사례] 폐교를 활용한 연수시설의 비과세 적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폐교활용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폐교를 교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직접사용’이라는 의미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은 물론이고 실제 사용용도 또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학교와 원거리에 떨어져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은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행자부 세정-3423, 2007. 8. 24)

[사례] 학교기업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적용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그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855, 2005. 5. 24)

[사례] 교회부설주차장에 대한 비과세 범위

교회의 교육관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경영상의 문제 및 교회의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해 동 토지를 교육관 신축용이 아닌 교회의 부설주차장(무료)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구내의 부설주차장이 법정 규모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 수 및 신도들의 차량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동 토지는 종교목적으로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3004, 2004. 9. 13)

- (2)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 마을회 등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함.
-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사례] 별정우체국관사에 대한 비과세 적용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5호에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귀 문과 같이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국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58, 1996.10.31. ; 세정 13407-1146, 2000.9.26)(행자부 세정-1824, 2007. 5. 18)

- (4)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업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다음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과세 제외

- ①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 사치성재산
- ② 3년(종교단체 등의 경우 1년)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매각부분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 사업용 비과세 제외대상

※ 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사업)

-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

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말함. 다만,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장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제외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
|---|

다) 천재·지변·소실 기타 불가항력으로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 등 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

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법 §108)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 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을 말함.

[사례] 차량 화재와 비과세 적용

비과세 대상은 지진이나 산불, 낙뢰 등으로 인한 화재와 풍수해, 폭설,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의 대체취득 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자동차 화재나 소실이 아닌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533, 2007. 3. 8)

라) 토지수용에 의한 대체취득 및 환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1)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함.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결한 시·군·구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결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과세

※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영 제79조의3 제1항)

-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함.
-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함.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구분	대체취득 부동산 등 비과세 지역 판단			
	매수 등 부동산 소재지시도(①)	①과 연결 시군구(②)	①과 연결 시도 (③)	(①+②+③)이외의 지역(④)
농지이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제외
			제외 (투기지역)	제외
농지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제외(투기지역)	제외(투기지역)
자경농민의 주택(50% 미만)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비과세 (투기지역이외)
			제외(투기지역)	제외(투기지역)

[지침] 대체취득 시 과표 적용 범위 (행자부 세정-152, 2005. 12. 20)

현 행	변 경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대체취득 시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2. 사업인정고시 된 상태에서 협의매수일부턴 수용일 이전에 대체취득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협의매수 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3. 사업인정고시 된 상태에서 수용일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 이후에 대체취득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수용(재결·화해) 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치성재산과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소유지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의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군 또는 “그와 연결한 구·시·군 지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

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거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주거기간으로 본다.

[사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단기준

부채부동산 판단기준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내에 수용된 토지가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로 고시된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며, 최초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채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3922, 2007. 9. 27)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추가 면적 변경고시 등이 발생된 경우라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례] 대체취득비과세 지역적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에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2006.12.19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6.12.22 충남 천안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대체취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동산의 최초보상금을 2007.1.2 최초로 수령한 경우라면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된 것)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도인 경기도와 연접된 충청남도로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대체취득 하는 물건 소재지인 충남 천안시 전 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주

택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행자부 세정-427, 2007. 1.24)

[사례]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되어 토지보상금과 건축물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을 각각 별도로 수령한 경우라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이 후 지장물 보상금을 포함한 건축물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임(행자부 세정-141, 2007. 2.9)

[사례] 종중토지에 대한 대체취득 시 비과세 적용요건

종중토지를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로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종중토지를 다수의 종원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로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3459, 2005. 10. 27)

- 종중토지의 경우 합유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유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대체취득 시 비과세 적용대상임

[사례] 대체취득의 비과세 적용범위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는 바, 그 이유는 부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각자가 관리·처분·수익할 수 있는 권

리자이므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행자부 세정-68, 2005. 12. 14)

[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 시 취득세 비과세 적용 판단

00신도시개발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 조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00신도시 개발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부동산 대체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임(행자부 세정-3810, 2005. 11. 16)

[사례] 대체취득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범위판단

토지, 건물, 임목, 선박, 어업권 및 광업권을 수용당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이에 해당하나 권리, 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 이농보상금, 주거 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13, 2004. 1. 8)

[사례]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발급근거

지방세면세등을위한토지수용확인서발급및지방세면제업무처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206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수용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동 국무총리훈령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발효와 동시에 폐지’한다는 조건으로 1995. 5. 30 폐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 훈령에 따라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4056, 2004. 11. 11)

※ 소유하는 토지 등이 수용(매수, 철거를 포함한다)되는 자가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 대체취득 시 등록방법과 등록세 등기시의 구비서류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 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상속인에 갈음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서류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67호)에 의거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정당한 권리자 확인서,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보상금수령증원부 또는 공탁서 원본), 재결에 의한 수용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본 등이 해당함(행자부 세정- 142, 2004. 1. 12)

(2) 환지 등에 의한 취득(법 §109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①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환지 이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②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환지 이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사례]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시 정산방법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환지계획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토지의 필지별로는 청산금을 부담하는 토지와 청산금을 수령하는 토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 필지별로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거 취득한 토지 전체 필지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전체 필지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행자부 세정-3412, 2004. 10. 11)

- 다른 사업지구 내에서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청산금을 청산하여 과세함

[사례] 도시재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 판단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95누5172, 1995.8.25 판결 참조) 귀 사가 분양처분 이전까지 다른 분양예정자로부터 소유권 지분을 전부 취득한 경우에도 환지 및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371, 2004. 8.5)

(3)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법 §110)

- 상속(포괄 유증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할 유증을 포함함)으로 인한 취득. 다만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가구 1주택의 범위(영 §79조의5)>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제외)을 1가구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직계비속은 분리되어 있어도 1가구로 봄.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단,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취득세 과세물건이 합병 후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례] 동거인의 범위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와 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 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거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2호 서식의 세대별주민등록표 후면“동거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함(행자부 세정-876, 2007. 3. 27)

-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여부로 판단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사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1조에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합유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며, 이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B조합의 자산 소유형태가 합유의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C기업의 주식을 B조합이 소유하고 있다가 B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 A기업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의 주식을 분할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의거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임(행자부 세정-39, 2005. 12. 13)

-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유물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임

[사례] 공유권분할과 명의신탁해지 비과세

갑은 A토지를 매수하고, 을은 B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갑은 A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편의상 A, B 토지를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A토지에 대한 을의 2분의 1지분을 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한다면,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1누 1704 판결 참조)(행자부 세정- 2577, 2004. 8. 17)

[사례] 합병의 시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비과세가 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라 함은 합병계약서상의 합병기일 이후합병을 원인으로 한 취득을 일컫는 것임.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위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조합주택의 경우 제외)
-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

바) 환매권 행사에 의한 취득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 토지수용법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사)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 포함)할 때 과세
-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
- 조세분류상 유통세 및 거래세의 일종

가. 과세객체

-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4조
- 2) 재산권의 등기 또는 등록과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 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이때의 등기 또는 등록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적 요건으로 충분

나. 납세의무자

-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4조
- 2)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외형상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

※ 등기권리자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

등기의무자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감축되는 자

[사례] 순차등기시의 등록세 납세의무 판단

최초분양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조성공사가 완료(준공)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잔금을 완납한 최초분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순차등기를 경료 한 후 최종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분양자는 토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행자부 세정-290, 2005. 1. 17)

[사례] 등록세의 납세의무의 범위판단

① 저당권 설정등기 시 납세의무자

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채권자의 이익과 권리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② 부부가 지분 1/2씩 공동출자하여 매입한 부동산을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판결에 의하여 처의 지분 1/2를 이전등기 시 이미 납부한 등록세 환부 여부

부부 공동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남편이 등기과정에서 각각의 지분 1/2씩 공동등기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납할 경우 처의 지분 1/2에 대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판결문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지방세액 처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환부되나 등록세는 환부되지 않음.

③ 대위등기시의 납세의무자

甲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세납세의무는 甲에게 있음.

④ 촉탁등시기 미납 납세의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는 소유권 보존등기자임.

다. 과세표준

1) 시가표준액 적용(법 제111조 ②, ③)

- 토지 및 주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 주택이외의 건축물
 -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결정
 -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함

2)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가) 법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 등기·등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나)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하며,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을 할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함.

(1)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할부이자(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단, 개인의 경우는 할부이자 제외))

(2) 화해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표준

화해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3) 신탁해지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시의 세율

판결에서 소유권 취득대가로 반대급부 지급을 명하여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취득(세율 1.5%)에 해당 됨

(4) 과세표준의 범위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의 취득가액에 등기가 되지 않는 공유부분의 취득 가액도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건물을 증·개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 증·개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 과세표준임.

3) 채권금액(법 제130조 ④)

가)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신청서상의 채권액)

나)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신청서의 채권최고액)

[판례] 채권금액의 범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채권금액'이란 바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의 '채권금액'은 그 용어 자체에서 채권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임이 문리상 명백하므로,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원금뿐 아니라 그 이자 역시 채권금액, 즉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사례] 가처분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의 범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1)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중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등기에 대하여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완납한 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가처

분 등기 설정시점까지 매수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매매대금) 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847, 2006. 2. 28)

라. 세 율

1)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

가) 용어의 정의

- “부동산”이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 75조의2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건물·시설물 및 부수시설물을 말함.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매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 대상건수별 “매1건”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등록대상을 일괄 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할 경우 또한 같음.

[사례] 등록세율 적용 시 지목판단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등기당시 당해 토지상에 주택 또는 공장이 건축되어 있으면 현황지목대로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보아야 함.

[지침] 법인등기의 등록세 산정기준(행자부 세정13430 - 347, 2001. 9. 20)

1. 지배인등기 및 상호등기

- 1) 법인의 지배인등기 및 상호등기 신청 시 등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의 지배인 등기 및 상호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9조를 적용함

2. 수개의 법인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신청 시 등록세 산정방법

1) 법인이 상호·목적·임원·공고방법 등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등기 신청하더라도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기재항목과는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만을 납부함

3)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구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나.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만 납부

4) 수개의 지점설치를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점설치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부

가.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에는 지점의 수와 관계없이 1건의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를 납부

나.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본점에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1건의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를 납부하고 지점에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지점 등기부별로 1건의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 납부

나) 세 율

권리별	등기 요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부동산가액	3/1,000	
		· 기타	"	8/1,000	
	②상속이외의 무상취득	· 일반	"	15/1,000	증여, 유증, 민법상 시효취득 등
		· 법제127조제1호제1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	"	8/1,000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
	③전①②이외의 취득	· 농지	"	10/1,000	매매, 교환, 기타 일체의 유상취득
		· 기타	"	20/1,000	
	④소유권의 보존		"	8/1,000	건축물증가면적등기포함
⑤공유, 합유 및 유물의 분할		"	3/1,000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2. 지상권	설정 및 이전		"	2/1,000	
3. 저당권	"		채권금액	2/1,000	담보가등기
4. 지역권	"		요역지	2/1,000	
5. 전세권	"		전세금액	2/1,000	
6.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2/1,000	
7.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2/1,000	
8. 가등기			부동산가액	2/1,000	
9. 상기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말소등기, 지목변경, 건물구조변경 등

[적용례]

- ① 과세표준적용 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증여·기부·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② 부동산 등기 시 과세표준 중 부동산가액이란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 없거나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또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가액을 말함.
- ③ 요역지는 승역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역권 설정의 경우에 두 토지 중에서 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함
- ④ 상속, 상속이외의 무상취득, 상속·무상 이외의 유상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 ⑤ 위 세율표에 의한 등록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세액을 3,000원으로 함
- ⑥ 건축물 면적 증가시의 등기는 기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등기로 보아 증가면적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8을 적용함
- ⑦ 부동산 이전등기 : 2%

[사례] 선하지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범위

선하지의 공중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공중공간면적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행자부 심사 제2002-139호, 2002.3.25 참조)고 하겠으므로, 선하지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 선하지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5038, 2007. 11. 26)

[사례]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 범위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행자부 심사 제2002-139호, 2002.3.25 참조)고 하겠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지상권설정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4260, 2007. 10. 18)

- 지상권 중 구분지상권의 경우 토지의 일부분의 공간에 설정됨에도 구분지상권의 과표를 전체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례] 대지권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범위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지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한 다음 그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번이 확정되어 대지권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그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3339, 2007. 8. 21)

- 대지권에 대한 과표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분 과표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나 이 경우 과표비율로 안분하여야 함

[사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등록세 적용 세율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에 따라 개인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무상승계취득에 의한 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임(행자부 세정-114, 2006. 1. 11)

[사례] 부기등기시 등록세 세율

주택법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와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

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표시하는 부기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등기예규 제1101호(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당해 부기등기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받은 시점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등기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별도로 등기되는 것이며 당해 부기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부기등기의 변경이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별개의 등기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주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기등기는 기타등기에 따른 등록세율(매1건당 3,000원)이 적용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62, 2006. 1. 23)

[사례] 이혼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 세율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5의 세율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간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199, 2005. 3. 19)

[사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적용 세율

-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시 부동산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 조직변경 전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조직변경후의 법인명으로 변경등기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매1건당 3,000원)을 적용하는 것임.

② 가등기의 등록세율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2)목(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규정을 적용하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2)목(채권금액의 1,000분 2)을 적용함.

③ 권리질권 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분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저당권의 세율이 아닌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됨

④ 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 시 세율

저당권 설정등기상 채무자 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로서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됨

○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 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동시설세 성격상 건물과표는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

○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등기되기 때문에 주택과표를 일괄 평가하더라도 이를 토지와과표와 건물과표로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과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안분기준은 비율법과 공제법이 있으나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율법에 따라 토지와과표와 건물과표 비율로 안분하기 위함

[사례] 부동산임차권설정등기 시 등록세 과세표준관련 해석 변경

(행자부 세정-1301, 2004. 5. 25)

등기종류	당초 유권해석	변 경
부동산임차권 설정등기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차금액을 합한 금액	임차보증금은 제외, 월임대차금액만 과표로 적용

[지침] 임차권에 대한 등록세 적용세율 지침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5) 및 제3항에서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시의 세율은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로 하고 그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의 경우 차임(매월 임대차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와 차임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5)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2. 11. 1. 등기예규 제1059호 참조)임(행자부 세정-292, 2004. 3. 4)

2) 신탁재산등기

가) 신탁의 정의

-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는 특별한 신탁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 신탁은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음(신탁법 제1조, 제2조)

나)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다) 비과세요건 :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

-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 (2)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원본 수익자가 아닌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이전 하는 경우는 과세
 -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부과
- (3)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세 율

신탁재산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① 부동산	부동산 가액 (비영리 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	10/1,000 (5/1,000)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
② 선 박	선박가액	10/1,000	

3) 선박등기(법 제132조)

가) 용어의 정의

- “선박”이라 함은 기선, 범선, 전마선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하고, 등기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임
- 등기소재지 : 선적항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등기

나) 20톤 이상 선박등기의 세율

권리별	등기요인	과세표준	세율	비고
1. 소유권	①상속취득	선박 가액	5/1,000	
	②무상취득	선박 가액	10/1,000	증여·유증 등
	③소유권보존	선박 가액	0.2/1,000	
	④①~③이외의 취득	선박 가액	10/1,000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
2. 기타	⑤①내지④이외의 등기	매1건당	7,500원	

- (1) 20톤 이상의 선박 중 부선은 선박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 부과
- (2) 선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격으로 하며, 과세표준액 계산요령은 부동산 등기와 같다.

다)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등록 세율

-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함

4) 자동차 등록

가) 용어의 정의

- 비영업용 : 개인,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
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
차와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배기량 125cc이하의 2륜 자
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함

나) 과세대상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및 125cc 초과 2륜 자동차

다) 과세제외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
을 복구하기 위한 자동차등록
-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 신고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4호 주소변경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례] 전국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시 과세판단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전국자동차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명의변
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최초 1회의 번호변경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 지방세
가 과세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3, 2004. 1. 10)

[사례] 주소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등록의 등록세 납부 판단

2004.1.1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규정이 개정되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에 대하여 등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
음(행자부 세정-450, 2004. 3. 15)

- 법인의 주소변경의 경우 2004. 1. 1부터 등록세 제외 대상으로 함

라) 세 율

권 리 별	등 록 요 건	과세 표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 - 경형자동차	자동차가액 "	50/1,000 20/1,000	
	②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형자동차 · 영업용	" " "	30/1,000 20/1,000 20/1,000	
2. 저당권 (설정)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	채권금액	2/1,000	
	②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 · 비영업용 · 영업용	" "	2 /1,000 2 /1,000	
3. 기타	신규·소유권 이전등록, 저당 권설정등록외의 등록	매1건당	7,500 원	차량의 종류변경, 말소등록 등

5) 기계장비 등록

가) 대 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등록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나) 세 율

권 리 별	등 록 요 인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등록	건설기계 가액	10/1,000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	2/1,000	
3. 기 타	신규·소유권 이전등록, 저당설정등록외의 등록	매1건당	5,000원	

- (1) 건설기계의 주소변경등록은 기타등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변경 등록)
- (2)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 가액으로 적용

6) 항공기의 등록

가) 대 상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민간항공의 용도에 제공하는 비행기, 비행선,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기타 항공의 용도에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함

나) 과세요건 :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

다) 세 율

-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 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 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록(법 제136조)

가) 대 상

- 공장재단 등기(공장저당법 제4장)
 - 공장 : 공장저당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와 영업을 위한 방송의 목적, 전기나 가스의 공급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함.

-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단으로서 공장저당법에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함.
- 광업재단등기(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제 시설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나) 세 율

권 리 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① 저당권 취득	채권금액	1/1,000	
② 저당권취득이외의 등기·등록	매 1건당	4,500	

8) 법인등기(법 제137조, 영 제100조)

가) 용어의 정의

-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함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장부상의 금액

나) 세 율

등 기	원 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①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	4/1,000	
	· 자본 또는 출자증가	불입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	4/1,000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2/1,000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총액	2/1,000	
③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자금의 증가,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 증가		증가한 금액	1/1,000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제외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1건당	75,000원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23,000원	
⑥ ① 내지 ⑤이외의 등기		"	23,000원	

※ 세율표 ①내지 ③의 경우,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는 이를 75,000원으로 함

[적용사례]

- ①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에로의 조직변경은 법인 설립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1)목 소정의 세율(1,000분의 4)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임
- ②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단체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사

업자 단체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매1건당 23,000원)을 적용하는 것임.

- ③ 자본증가등기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총액의 증가 등이 변경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자가액에 대한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자본 변경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④ 불입과 출자금액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자본금 또는 그 증가액을 말함

[사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의 과표적용

대도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일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일로 보고 그 설립등기에 대한 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재산가액으로 표기된 자산총액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656, 2007. 7. 10)

- 지방세법상 불입되는 자산총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재산가액으로 되어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필요함.

[사례] 매1건과 법인이전등기시의 적용세율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구소재지에서는 동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며, 동일 등기소 관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게 됨(행자부 세정 13407-1270, 2000. 11. 4)

[사례] 공유물분할과 적용세율

“갑”과 “을”이 당해 부동산에 대해 각각 1/2씩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갑”이 3/5, “을”이 2/5씩 분할소유하게 될 경우, “갑”은 분할되기 전 자기지분인 1/2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자기지분보다 초과하여 분할 받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30(농지의 경우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됨.(행자부 세정 13407-1239, 2000. 10.24)

9)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중과세

가) 대도시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지역내에서 제외(공장신증설의 중과세 판단 시에는 유치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제외함)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취득세 편 참조

나) 중과(重課)대상

(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중과하지 아니함.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 이때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
- 대도시외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함.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이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봄
-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이거나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이거나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임.
 -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대도시 내에서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
 - 지점 등(사무소 또는 사업장)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 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함.

<제외대상>

- ①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②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③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대도시 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 개인 또는 당해 대도시내에서 설립·전입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공장 신증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대도시 안에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제외.

<공장신설제외>

① 공장의 승계취득

-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

② 공장이전

-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함

③ 공장의 업종변경

-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준용
 - 공장의 신·증설을 위하여 등기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공장용

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용에 제공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공장신·증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기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이외의 용도에 5년 이상 사용한 후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등기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보지 아니함.
-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항 제6호(법인등기 시 매1건당 23,000원)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아님.

[사례]

①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이전 시 중과여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의 다른 장소로 본점이전(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제외함)에 따른 법인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② 신설법인이 공장 승계취득 등기 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인 법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승계취득한 공장용 부동산포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임. 다만,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 않음.

-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첫째,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흡수합병은 물론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중과세되지 아니한다. 둘째,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신설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으로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되고 신설법인으로 흡수합병되는 경우와 신설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존법인기준	신설법인기준	
기존-기존법人间	중과제외	없음	중과제외
기존-신설법人间	중과제외	중과세 (신설법인자산비율)	중과세 (신설법인자산비율)

다) 중과세 예외 대상(업종)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건물로서 전용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용 부동산에 한함) 및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첨단업종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인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함)이 영위하는 사업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함).

-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 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함)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 공급업 및 전송망사업
-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에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주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 방송법 제2조 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그 설립목적에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및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을 겸용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 위 대도시내의 법인중과 예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중과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판례]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사실상 지점요건과 인적설비 구비요건 판단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참조).

원고가 2001. 8. 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원고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삼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일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삼일개발로부터 건물청소·시설관리·경비 및 안전관리 등의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고는 있으나, 삼일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관리용역 이외에 원고의 한국지점장인 조00 명의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위 조00의 승낙을 받아 그 통장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인출하여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삼일개발의 인력채용이나 충원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집행시 원고의 사전승낙을 받거나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조00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삼일개발의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일개발은 비록 원고와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이외에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위 사업장을 원고의 지점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7. 8. 24.결정, 2005두13469)

-인적설비는 종업원의 고용 형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직속여부가 아니더라도 무관하나 당해 법인의 업무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판례] 등록세 중과세제외대상인 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다음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공사대금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분양 등을 통해 그 공사대금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일 뿐 원고회사 본점이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과세 취소의 범위는 이 사건 건물 취득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는 것과 건축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일체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취득액 전부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누5207, 2006. 10. 20.)

[판례]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과 주택건설업의 범위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참조).

[판례] 일체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

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00동 5가 18, 19, 39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0000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하이마트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그 이후 원고의 본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 마포구 00동 686 소재 건물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와 원고의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5두4205, 2006. 9. 8.)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회사는 1993.5.13. 서울 성북구 〇〇동 25의 6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 설치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1997.8.경 제1건물을 증축하여 1997.10.6. 건물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 원고회사는 1997.12.24. 경기 화성군 〇〇면 〇〇리 115의 1에 있던 공장 및 지점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제1건물에 있던 본점을 서울지점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

음, 이 사건 ㉔등기는 원고회사가 제1건물을 신축하여 거기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서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에 본점을 다시 이전하면서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할 의사로 미리 마쳐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㉕등기는 제1건물에 설치된 본점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기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등기당시 원고회사는 여전히 제1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㉕등기는 본점의 영업을 위한 증축에 따른 등기로 추정되고, 달리 서울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증축을 한 후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㉔, ㉕등기와 서울지점의 설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각 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 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2001두3747, 2001.12.28.)

-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없이 본점이 사용하다가 추후 5년이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

3. 소외 주식회사 ○○석유는 인천 부평구 ○○동 411-16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1988.8.1.부터 "○○석유 직영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영업을 하던 중 1994.10.31. 주식회사 ○○사에 흡수합병되어 ○○사가 1994.11.1.부터 위 ○○주유소의 상호를 "○사 ○○본부 ○○주유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사가 1997.9.25. ○○○○에너지판매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00.7.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사 및 ○○○○에너지판매는 위 ○○석유를 흡수합병하여 위 ○○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1996.3.7. 및 1998.3.27. 위 ○○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인천 부평구 ○○동 411-42 대 193.2㎡, ○○동 411-22 대 357㎡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박○영, 조○준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는 ○○사가 대도시 내에 1994.11.1.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석유의 지점을 그 소속만 ○○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에너지판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사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2003두6566, 2004.09.03)

- 합병으로 합병전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지점을 설치한후 5년 이내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원고 법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본점)과 일산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중과세율 역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된 1996. 8. 10. 이미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그 적용세율도 위 1996. 8. 10. 당시 시행되던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표준세율의 5배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 및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두7620, 2006. 4. 27)

5.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부과체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의 의미를 당해 법인의 지점 등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한 날로

해석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지점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영업소를 설치한 것이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사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범위와 자산기준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이라 함은 부채+자본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268, 2005. 6. 21)

[지침] 대도시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적용

대법원판례(94누11804 1995.4.28)에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설립 또는 대도시외에서 전입 전 5년 이내의 법인이 인적·물적시설이 소요되는 본점·지점 등 사업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운용함(행자부 세정-287, 2005. 4. 19)

[사례] 지점에 대한 중과세 적용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립 요건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 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같은 대도시내의 다른 구(區)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다른 구(區)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지점요건이 결여되어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4007, 2005. 11. 29)

- 지점 설치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장소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됨

[지침] 재건축조합의 등록세 중과세제외 적용지침

재건축조합(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를 신설하여 2004.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설립허가를 받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후 대도시내 재건축조합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를 신설하기 전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3855, 2004. 11. 3)

마. 부과징수

1) 납세지 (법 제125조)

-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선박(선적항소재지), 자동차(사용본거지), 건설기계(등록지), 항공기(정치장소재지), 법인등기(주사무소 등 소재지), 상호(영어장소재지), 광업권(광구), 어업권(어장), 저작권등(주소지), 특허권등(등록권자주소지), 상표등(주사무소), 영업허가(영업장), 기타등록(등기·등록관청소재지)
-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시·도
- 동일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기관청 소재지에서 부과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2) 납부절차 및 방법

가) 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저당권 등기 또는 등록(법 제150조, 영 제103조)

- 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
- 동일채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법 제136조)

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공장 및 광업
재단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

나)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추가등기 또는 등록(법 제150조, 영제
104조)

-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매1건당 3,000원), 법 제132조 제1항
제5호(매 1건당 7,500원), 법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매 1건당
7,500원), 법 제132조의2 제2항 제3호(매 1건당 7,500원), 법 제136
조 제2호(매 1건당 4,500원), 법 제141조 제1항 제4호(매 1건당
6,000원), 법 제142조 제3호(매 1건당 4,500원), 법제143조 제3호
(매 1건당 1,500원)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적용대상 목적물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공장 및 광업재단, 광업
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사례] 등록세의 납세지 판단

- ① 동일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A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B지역에 있는 부동
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설정한 지역에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고 B지역에서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②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경우 동일채권에 대하여 토지 2필
지를 추가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2건으로 과세하여야 함

다) 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법 제129조, 영 제99조)

(1) 부과 특례

-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
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回)의 발행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 징수방법
 -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 사채발행 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 징수는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신고 및 납부(법 제150조의2, 영 제104조의2)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중과)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 제101조 제1항(대도시내 법인중과 예외)각호에 규정에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중과)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3년경과)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날
 -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신고납부

마) 특별징수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국제등록에 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등록세 납부 영수증서의 처리(영 제91조)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
-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
-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5일 이내에 송부(등기소 또는 등

록관청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

-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 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

사) 촉탁등기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영 제92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 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법 제151조)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다만,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가산율(1일 10,000분의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4) 등기자료의 통보(법 제151조의2, 영 제105조)

-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
-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부분의 접수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 시장·군수가 대도시 지역 내에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법 제126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과세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사례] 압류등기 해제 시의 등록세 면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 등록을 할 경우에는 법 제126조 및 국세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 취득세편 참조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분할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등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해당되는 경우
- ②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③ 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중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그 부분에 대하여 부과)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매각부분에 대하여 추정.

3)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법 제127조의 2)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지방세법 제108조)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중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등록을 포함한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지방세법 제109조)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선박, 어업권, 광업권

4)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법 제128조)

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권취득등기 또는 등록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
- 신탁의 수탁자 경질(更迭)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나)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

-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 징발(徵發)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사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등기의 경우 비과세

1.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에서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건물의 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었다면 당초 토지소유자 지분의 초과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당초 등기소에 건물과 대지권등기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과오)로 대지권 등기에 착오 또는 오류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465, 2004. 2. 3)
2. 당초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한 첨부서류(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과오)로 자본증가에 따른 자본총액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등록세 등의 일부를 환부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 14, 2004. 1. 3)

라)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위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마)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

[사례]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의 범위

종교용(교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되므로 등기 시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665, 1999. 6. 3)

[사례] 등록세 비과세판단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407-118, 2001. 7. 23)

3. 면허세

가. 과세대상

-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 대상을 1종~5종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 열거
- 제조·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

나. 납세의무자

-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에 대한 이익의 수혜 여부 불구함.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그 다음 연도에 당해 면허에 대하여 납부할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례]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방법

1구내에 각각 독립된 수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1건으로 받았더라도 이는 허가절차상 독립된 수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편의에 의하여 하나의 면허증서로 통보를 한 데 불과한 것으로 각 동별로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

다. 과세표준과 세율

종 별	지역별		인구50만이상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 타 시	군
	1	2			
제 1	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 2	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 3	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 4	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 5	종		12,000원	5,000원	3,000원

※ 종별구분은 면허내용의 면적·인원·수량 등에 의하여 구분됨.

라. 비과세·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면허(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등

[사례] 간이과세자의 신고행위에 대한 면허세 납세의무 판단

전자상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면허부여기관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반려 등을 통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근거없는 행정처분 행위에 해당되고,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의 당연 제외를 전제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허세 과세면제 요건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시분 및 정기분 모두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행자부 세정-4442, 2007. 10. 29)

-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면허부여기관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반려 등을 통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근거없는 행정처분 행위로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음

[사례] 면허세 과세 범위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사무소의 직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 : 법령지원팀-326호 '05.10.18 참조)(행자부 세정-389, 2006. 1. 31)

[사례] 보관된 총포소지면허 비과세

지방세법제16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2 제3호에 의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지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포 및 총포의 부품(총포신 및 기관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은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기총 구입 후 총포의 기관부(발사장치가 있는 방아쇠뭉치 포함)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16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2 제3호에 의하여 면허세가 비과세됨(행자부 세정-198, 2005. 4. 18)

- 공기총 구입 후 총포의 기관부(발사장치가 있는 방아쇠뭉치 포함)를 경찰서에 보관 시에도 비과세 적용

마. 부과징수

1) 납세지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거소·사업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거소·사업소 또는 영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응익원칙에 따라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과세
-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거소·주소의 순위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
-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2) 납 기

- 정기분(2년 이상 계속되는 면허) : 매년 1. 16~1. 31(과세기준일 :
매년 1. 1)
- 수시분(신규면허, 변경면허)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 : 건축허가 등
 - ※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수시분으로만 면허세를 과세하되 정기분 과세 제외

3) 납세의 효력

-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으로 존속 또는 설립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
- 면허의 유효기간 종료, 면허의 취득 등으로 면허가 소멸한 경우라도 기납부한 면허세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사례] 농협의 신용사업 등에 대한 면허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는 동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행정행위 등의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면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동법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는 당해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는 것이지만,

-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70호)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은행업
-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
- 신탁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보험업, 양곡가공업, 창고업, 무역업, 자동차운송사업, 부동산중개업은 동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면허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여 당해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행자부 세정 13430~347, 1997. 7. 21)

4. 레저세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
-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 사업장(“경륜장등”)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 납세지

-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매표소의 도

라. 안분기준

-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세액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납부

마. 납 기

- 신고납부 : 경륜·경정종료일 또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결정 또는 경정시

바. 가산세

-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시 : 10%[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일자에 가산율 (1일 10,000분의3)을 곱하여 산정함.]

사. 비과세 및 감면 : 없음

5. 공동시설세

가. 과세대상

- 대상지역 : 조례로 정함(소방혜택을 받는 지역)
- 대상물건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소방선이 있는 시·군)

나. 납세의무자

- 납세대상 지역 내의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

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 세 기 준 일	납 기
건물분, 주택분(1) : 매년 6월 1일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분, 주택분(2) : 매년 6월 1일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에 병기고지 되므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나 납기가 동일

라. 과세표준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50%

주택 : 건물시가 표준액의 50%

건축물 : 건물시가 표준액의 50%

선박 : 시가표준액

마. 세 율

<건물 등>
6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오물처리 등> : 1,000분의 0.23

바. 중과세(일반세율의 2배)

1) 적용대상

-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예식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공장
-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 적용요령

- 화재위험 건축물과 타 용도의 건축물과 겸용 사용하는 경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과 기타용도에 겸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이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여 중과세여부를 결정함.

- 화재위험 건축물과 타 용도로 구분 사용하는 경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과 그 이외의 용도로 구분사용 되는 경우는 화재위험 건축물 부분만을 중과세율을 적용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때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며 세액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 소방공동시설세액 = X + Y
-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 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Y = X × $\frac{\text{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text{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표준세율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건축물 또는 토지가액의 1,000분의 0.3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세율의 5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사례]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세율 적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 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 건축물이 비록 수동의 건축물로 나누어져 있다하더라도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시설세 부과에 있어 화재위험 건축물의 적용은 동일구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야 함(행자부 세정-2834, 2007. 7. 24)

사. 비과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외에 시설물도 과세대상임.)
-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

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가 비과세되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함.

아. 부과징수

- 건물분, 주택분 : 건물분(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 납세고지토록 함
- 토지분, 주택분 :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 납세고지토록 함
- 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세부담 50%이상 상승 시 50%범위 내에서 세부담 적용

[산출예시]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8,000천원인 경우

- ① $8,000,000 - 5,000,000 = 3,000,000$ 원
- ② $3,000,000 \times (0.8/1,000) = 2,400$ 원
- ③ $5,000,000 \times (0.6/1,000) = 3,000$ 원
- ④ ② + ③ = 5,400원

- 중과세대상인 경우

- 총연면적 : 1,000m² 과표 100,000천원
- 유흥영업주점 : 200m² 과표 20,000천원
- 일반용도 : 800m² 과표 80,000천원

- ① $100,000 \text{천원} \times 0.16\% - 23,000 = 137,000$ 원
- ② $137,000 \text{원} \times 20,000/100,000 = 27,400$ 원
- ③ ①+②=164,400원

6. 지역개발세

가. 과세대상

-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가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를 제외
- 지하수
 - 음용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굴된 지하수
 -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기타용수 : 상기이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
- ※ 공업용수라 함은 별표 3의 공장의 종류 제1호중“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
- 지하자원 : 채광자가 채광한 광물. 다만, 암석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 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컨테이너, 연안수송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나.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여 음료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캐는 채광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항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과세표준과 세율

- 지하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m³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m³당 100원
 - 기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1m³당 20원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 ※ TEU(Twenty Equivalent Unit) :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의 단위
 - ※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원자력 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 당 0.5원

라. 부과징수

1) 납세지

- 지하수 :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
- 원자력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 납 기

매월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컨테이너의 경우 20일)까지

3) 징수방법

- 신고납부(컨테이너 제외)방식이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미납부나 과소납부 시 미납 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가산율(1일 10,000분의 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가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과세권자가 수시 부과

4) 소액부징수

- 지역개발세로 징수한 세액이 고지 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개발세로 징수하지 아니함.

[사례]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판단

구지방세법 제254조 제3호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자원인 규석을 채광하여 이를 파쇄, 건조 및 분쇄하여 주강 및 주물용 제품을 생산하는 타 업체에 원료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라면, 채광한 지하

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라고 볼수 없어 구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가 없음(행자부 세정-184, 2007. 1.11)

- 규석을 채광하여 가공처리 없이 파쇄, 건조 및 분쇄공정을 거쳐 주강 및 주물용 원료인 규사로 판매하는 경우, 구지방세법 제25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하자원의 납세의무자인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파쇄, 건조 및 분쇄공정이 가공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항에 해당함

7. 지방교육세

가.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課 稅 標 準	標 準 稅 率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登錄稅額	100분의 20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稅額	100분의 40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住民稅均等割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財産稅額	100분의 20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自動車稅額	100분의 30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消費稅額	100분의 5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상기 (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상기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다만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 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 할·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 한다.

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부나 과소납부 시 미납 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가산율(1일 10,000분의 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마. 환 부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8. 주민세

가. 주민세의 구분

- 균등할 : 개인 균등할 - 주소지할, 사업장할, 법인 균등할
- 소득할 :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

나. 납세의무자

1) 균등할

가) 개인균등할

- 당해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 주소 - 생활의 주된 근거가 되는 곳(민법 §18①)
- 시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포함.(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사례]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개인균등할 납세의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단순히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지침] 비영리법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적용기준

1. 적용기준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기타법인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50,000원)을 적용

2. 적용시기 : 2006. 6. 12. 이후 부과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부터 적용.

(행자부 세정-3484, 2006. 8.4)

-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49, 2006. 6. 12. 해석)

[사례] 비영리법인의 출연금 기준 과표와 균등할 주민세 적용 세율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49, 2006. 6. 12. 해석 참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기타법인에 해당하는 세율(50,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3375, 2006. 7. 31)

[사례] 외향선원의 종업원 범위

국외를 향해하는 외향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은 사실상 근무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나 선박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근무지(귀문의 경우 제주항)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외 등에서 근로제공”이라 함은 국외 등을 향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외향선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할 안분대상 종업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할 안분대상 인적설비의 사업장 귀속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이 실제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곳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내향선박의 경우 선박과 선원관리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당해 선원의 근무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적항에 선박등록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선적항 이외의 곳에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선박을 사실상 관리하는 곳(귀문의 경우 부산지사)을 선원의 근무지로 보아 법인세할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박관리업무를 전문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하고서 수탁 받은 전문선박관련 업체에서 외국선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하는 등 선원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외국선원은 수탁업체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귀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할 안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행자부 세정-309, 2005. 4. 20)

나)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업장별로 과세
-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요건
 - 인적설비가 있고
 - 물적설비가 있어야 하며
 - 일정한 사무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당해 건물 또는 시설이 자기 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할 뿐 아니라,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등기 유무에 불구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장소를 말함.

[사례] 입점백화점의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 판단

백화점 내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 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관
촉 활동을 한 것은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대상 사업소로 볼 수 없음(행자부 세정- 1757 , 2004.
6. 28)

2) 소득할

- 시·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과 법인

다. 과세표준과 세율

1) 균등할

- 개인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인 10,000원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음.
 - 개인에 대한 균등할 세율 : 10,000원 이내 범위
 -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세율 : 50,000원(표준세율)
- 법인균등할 세율

구 분	세 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 기타법인	50,000원

2)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할은 사업장별로 종업원 수와 사업장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안분과세하나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또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납부

라. 부과징수

1) 보통징수 : 균등할은 전액 보통징수(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 납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특별징수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 익월 10일까지 특별징수의무 시 소재지 시·군·구 금고에 납입
(납부서에 계산서, 명세서 첨부)불이행시 가산세 10%

단,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3) 신고납부

○ 법인세할 :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법인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신고일부터 1월 이내). 다만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할 : 소득세할(소득세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확정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은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종료일

※ 신고불이행 및 세액미달 신고 시에는 미납부나 과소납부시 미납 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가산율(1일 10,000분의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

※ 2001. 5. 1부터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법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 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③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지침] 법인세할주민세 가산세 적용요령(행자부 세정-993, 2005. 6. 2)

- ① 법인세할 주민세를 종전방식대로 수기납부서(별지제71호의3 서식)에 의하여 기한 내에 적법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 기존의 수기납부서에 개정법령 별지 제7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 다만,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토록 함.
-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인터넷신고 등을 모두 인정
 - 신고 시에는 접수대장(별첨)에 등재하고 요구 시 접수증을 교부

4) 소액부징수(법 §179)

소득할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특별징수분의 경우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없음)

5) 특별징수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②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한다.

6) 특별징수 주민세의 가감조정

-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5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함.

-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환부 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침] 부당공제에 따른 추정시 주민세 납세지(행자부 세정-331, 2007. 2.23)

1.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근로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는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시·군이므로 특별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시에 부당공제에 따른 주민세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입하여야 함

○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이므로

- 부당공제된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일 현재의 신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입하여야 함
- ※ 다만, 근로자가 연말정산일 현재(매년 12. 31.) A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이후 A사업장 관할 시·군이 아닌 B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A사업장 근무년도 연말정산 부당공제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A사업장 관할 시·군이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가 됨.

○ 근로자가 퇴직하여 소속 사업장이 없는 경우

- 퇴직한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직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징수의무자는 부과·징수할 수 없음

2.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따른 주민세 가산세 부과 여부

○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결정(경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은 신고 또는 결정(경정)된 소득세가 되므로 별도로 주민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은 부과대상이 아님

[판례] 인정상여의 근로소득세분 주민세 납세의무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역시 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될 뿐이어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다1360, 2006. 10.26)

9. 재산세

가. 의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군·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는 1차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지방세는 전액 공제한 후 차액을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개편하고 나대지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로 하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세」로 과세

나. 과세대상

지방세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가 이에 해당되나 타세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범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비교·판단하여야 한다.

① 토 지 ② 건축물 ③ 주 택 ④ 선박, 항공기

1) 토 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여기서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유무를 불문하고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 등은 준공인가일 또는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이후에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28개지목 : 지적법 제5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2) 건축물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 건축물의 범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없음)

지방세법상 건물의 판단은 건축법상의 건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건물은 우선 지붕이 있어야 하고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것이기 건물의 구조형태를 기준으로 건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정의를 인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① 지붕+벽 → 「건물」로 과세대상
- ② 지붕+기둥 → " (필로티 부분)
- ③ 지붕+(벽+기둥) → "

따라서 지붕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로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붕」 요소는 필수조건이라 하고 건물면적은 내력벽의 건축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판단하되 필로티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물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상 필로티부분은 무벽 건물로서 건물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축물과세대상 범위의 비교>

현 행		→	개 정	
주택(건물)	일반건물		주택(건물)	일반건물
부속 시설물(제외)	시설물		부속 시설물(포함)	시설물
부수시설물(제외)	부수시설물(제외)		부수시설물(제외)	부수시설물(제외)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 :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열수송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시설용철탑

3) 주택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건물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외에는 단독주택이다.

주택의 범위 : 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 ② 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의 일부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당해 부속토지를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으로 안분한 토지부분을 주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택은 건물 구조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① 침실, 거실 ② 화장실

③ 부엌 ④ 출입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콘도미니엄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으나 별장과 같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언제든지 세대원이 수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별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이다.

4) 선박

- 시·군·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으로서
- 기선, 범선, 전마선 이하 명칭을 불문한 모든 배

선박을 재산세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군내에 선적항이나 정계장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적항이나 정계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납세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상품으로서의 선박을 제조·건조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승계취득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 과세대상의 구분

1)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전국합산이 아닌 시군구별 합산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있고 개별토지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가) 분리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일정요건을 구비한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중중소유임야로서 일정요건을 구비한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인정하는 토지

(1) 공장용지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즉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내의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치한 공장과 특별시, 광역시, 시의 읍·면지역 및 전국 군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별표 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 하나 기준초과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text{공장입지기준면적} = \frac{\text{공장건축물 연면적}}{\text{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 \text{추가인정기준에 의한 면적}$$

그리고 시지역의 「산업단지」·「공업지역」과 읍·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영업용건축물로 보아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고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한다.

첫째, 여기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즉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를 공장구 외에 배치토록 한 경우에는 비록 공장구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건축물로 보아 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조시설 지원 또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

둘째,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포함한다. 이때 건축 중이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건축의 전 단계인 공장부지 조성사업 중인 경우에는

건축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물면적은 설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농지(전·답·과수원)

(가) 자경농민소유의 농지

전·답·과수원(“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나 특별시 지역·광역시 지역(군 지역을 제외한다)·시 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광역시의 군 지역 도농복합형시의 읍면 지역은 종전과 같이 군 지역으로 본다. 따라서 농민의 경우 실제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나) 법인 또는 단체소유의 농지

원칙적으로 법인소유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되나 다음 경우는 분리과세된다.

- ①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주식회사 제외)
- ②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③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

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농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시설에서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운영비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분리과세 되지 않는다.

- ④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耕作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 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기타 농지

- 종중소유의 농지

종중명의로 등기된 농지와 종중소유의 농지로 신고된 농지로서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 이 경우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목장용지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1990. 1. 1. 이후 상속이나 법인합병으로 취득·소유토지)에 한한다.

(4) 임야

- 특수개발지역 임야, 보전산지 내 임야, 시업중인 임야

-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임야, 자연환경지구 내의 임야, 종중소유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도로접도구역 안의 임야, 철도노선 인접지역 안의 임야, 도시공원 안의 임야, 하천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임야

(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6) 공급목적의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한국토지공사의 공급용 토지, 대한주택공사의 분양 또는 임대목적 토지, 염전,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발전시설용 토지, 광구 내의 토지, 공유수면매립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가스공급용 토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설비용토지, 국방상의 목적 이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농·수·임협 등의 구관사업용 토지,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 또는 임대용 토지,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일시 취득 토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 토지,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 중인 토지, 원형지, 수력댐건설용 토지, 군용화약류시험장 토지,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 토지, 도시개발사업용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 등 지원시설용 토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

집 사용하는 토지23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 토지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의 과세구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0.07% 분리과세대상	복지시설의 자가소비용 농지, 보전임지 내의 영림계획인가림, 보전임지 내의 특수개발지역 지정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 군사보호시설구역 및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임야(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함)
0.2% 분리과세대상	수익사업용 토지,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4% 분리과세대상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나) 별도합산 대상토지

(1) 공장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

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 토지

일반영업용건축물(모든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을 제외)부속토지로서 건축물(바닥면적)과 시설물 및 지상정착물(수평투영면적)의 연면적에 대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이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규정된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2.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
|---|

[사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수개의 필지에 다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임(행자부 세정-4597, 2007. 11.6)

(3)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및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옥외작업장,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 및 보세창고용 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업소용·자동차폐차업소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사업장용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자동차검사용 토지, 유통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제조업용 토지,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야외전시장용 토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토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내 토지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

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사례] 묘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요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3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2997, 2007. 8. 1)

다) 종합합산 대상토지

과세기준일 현재(6. 1)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에 해당하는 토지

2) 주택

가) 주거용 부분만을 주택으로 인정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의 과세대상 구분과 한계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나) 주거 겸용주택의 판단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거용 사용비율이 50% 미만에 해당하나 사실상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기점으로 그 안에 있는 부분의 부속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라. 납세의무자

1) 원칙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산세과세기준일 : 매년 6. 1. 현재 소유자

2) 예외적 납세의무자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재산소유자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소유자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의무자로 의제한다.

가)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나)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다) 미신고 종중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판례] 사실상의 소유자 범위

원고가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만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수인·수증자의 신고해태 때문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과세당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34조의21 제1항 소정의 신고 의무자는, 원고 주장처럼 매수인·수증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34조의21 제1항 소정의 신고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두14493, 2006. 5. 25)

라) 연부취득중인 재산의 매수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마)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판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그 등기부상에도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조합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제6항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그 수탁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한다(대법원 2006두14582, 2007. 3. 15)

바)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납세의무자 : 사용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 납세지

1. 토 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3. 주 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4. 선 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마.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재산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 제 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영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지침]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행자부 세정-171, 2005. 4. 13)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뚫으로 인하여 생긴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함

-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 경우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등

이 이에 해당 한다

- 2)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3)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4)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

바. 과세표준

정부의 8. 31조치에 의거 재산세의 적용 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달리 두고 있고 있다. 즉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1) 토지 과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과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이외의 건축물(일반상가, 사무실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용도, 구조, 위치)와 잔가율 및 부대설비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된다.

3) 주택 과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선박 과표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항공기 과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사. 서울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공장용 건축물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별장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취득세편 참고바람)

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고급선박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6) 대도시내 공장신증설 중과세 : 5배

7) 탄력세율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세율적용

가)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적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내 합산하여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당해 토지로서만 과세세율을 적용.

나)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9) 부과징수

가)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기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 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나) 징수방법 등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 소액부징수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 세부담 상한제

(1) 개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건물 원가방식을 토

지와 건물을 합하여 시가방식으로 일괄 평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저항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세부담 인상폭을 제한토록 세부담 인상 상한제(circuit breaker system)를 마련한 것이며 지방세법상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용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세부담상한제는 인상폭을 전년대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여 그 인상폭을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인근 주택과의 재산세 과세 불형평이 당분간 초래되기 때문에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신축 주택 등에 대하여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직전연도에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함.
- 다만,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과세된 그 세액으로 상당액으로 함

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과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함
-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을 직전 연도에 실제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이 법 제188조제2항 각 목 및 같은 조 제3항 각 목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 해당 연도의 세율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의 경우

-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함.

○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

-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

마) 과세자료의 통수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시군구에서는 시도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건물분재산세는 7월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말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취합된 자료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산하여 국세청장에게 건물분 재산세는 8월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10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분 과세변동자료는 매분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10. 자동차세

가. 부과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나. 납세의무자(법 §196의3)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과세표준과 세율(법 §196의5)

1) 승용자동차

○ 자동차 총배기량에 다음의 세액을 곱하여 산정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000시시 이하	18원	18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80원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8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00원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9원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140원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 ($2 \leq n \leq 12$)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과 승합자동차세액(65천원)의 차액에 33%, 2006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과 승합자동차세액(65천원)의 차액에 66%,

2007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과세 된다. 이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50%, 2008년 33%, 2009년 16%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66%, 2009년 33%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자치단체감면조례).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2) 기타 소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 영 업 용 : 연간 20,000원
- 비영업용 : 연간 100,000원

3) 승합자동차

- 고속버스(사업용 고속버스) : 연간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인 사업용버스) : 연간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대형 전세버스 외의 사업용버스) : 연간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로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버스 및 비영업용버스)
 - 영 업 용 : 연간 42,000원
 - 비영업용 : 연간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버스 및 비영업용 버스로서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 영 업 용 : 연간 25,000원
 - 비영업용 : 연간 65,000원

4)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 영 업 용 : 적재적량에 따라 연간 6,600원~45,000원
- 비영업용 : 적재적량에 따라 연간 28,500원~157,000원
- 다만, 10,000kg초과 화물차는 매 10,000kg초과 시 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대형 특수자동차(적재정량 4톤 초과)
 - 영 업 용 : 연간 36,000원
 - 비영업용 : 연간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적재정량 4톤 이하)
 - 영 업 용 : 연간 13,500원
 - 비영업용 : 연간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 업 용 : 연간 3,300원
- 비영업용 : 연간 18,000원

특별시와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의 시장은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사례] 앰블런스의 차종 구분

환자수송용에만 공하기 위하여 특수 장치, 적재정량 4톤 미만 또는 이에 상당한 배기량을 가진 앰블런스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며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만 비과세됨.

[사례] 트레일러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견인차와 피견인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차량으로 등록되므로 각 차량의 용도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용도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도에 의하며 용도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함.(세정 22670 - 5338, 1988. 5. 18)

라. 부과징수

1) 부과징수 및 납세지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과세함.
-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함.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세율이 변경됨으로 이를 수시부과 대상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서 종전에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와 같이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납기(법 §196조의 6)

- 가) 정기분 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세액의 납부]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일시에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고, 4분기로 분납도 가능
- 연세액의 일시 납부기간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 16 - 1. 31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 16 - 6. 30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 16 - 3. 31까지, 9. 16 - 9. 31까지

나)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한 경우
- 비과세·감면대상이 과세대상으로 되거나 과세대상이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된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다) 세액 일할 계산

-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등과 같이 수시 부과대상이 된 경우

$$\text{당해기분의 자동차세액} \times \frac{\text{당해기분중 사용일수}}{\text{당해기분의 총 일수}} = \text{납부세액}$$

-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경우

$$\begin{array}{l} \text{용도 또는 종류를} \\ \text{변경하기전의} \\ \text{당해기분의 자동차세} \end{array} \times \frac{\text{당해기간중 용도 또는 종류변경전 일수}}{\text{당해기분 총 일수}}$$

$$\begin{array}{l} \text{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한} \\ \text{당해기분의 자동차세} \end{array} \times \frac{\text{당해기간중 용도 또는 종류변경후 일수}}{\text{당해기분 총 일수}}$$

-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시 일할계산

$$\text{당해자동차 연간세액} \times \frac{\text{과세대상기간일수}}{\text{당해연도의 총 일수}}$$

※ 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차령별 차등과세 선납업무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세정13430-27, 2001. 1. 8)

□ 주요 개정내용

-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차등과세 운영요령

- 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 3)

기산일	1. 1 ~ 6. 30	7. 1 ~ 12. 31	
		제1기분	제2기분
계 산	과세연도-기산일 연도 +1	과세연도- 기산일 연도	과세연도-기산일 연도+1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당해 자동차의 기본세액 - [기본세액 × 5/100 × (차령-2)]

※ 세액은 제1·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 2001년 자동차세 선납 시 차등과세 적용

○ 차령 3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 시는 분기별 세액으로 산정
(영 제146조의7 제2항)

◀ 적용 예 ▶

○ 최초 등록일 '98. 3. 1, 경감 전 연세액이 20만원인 자동차 경우

① 차령 계산 : $2001 - 1998 + 1 = 4$ 년(경감을 10%)

② 2001 연세액 : 190천원

(제1기분)

(제2기분)

10 만원 + [10 만원 - { 10 만원 \times $5/100 \times (4-2)$ }] = 190천원

③ 1월중 선납 시 납부세액 : 171천원

190천원(연세액) - 19천원(10% 공제) = 171천원

④ 6월중 선납 시 납부세액 : 181천원

100천원(제1기분) + {9만원(제2기분) - 9천원(10% 공제액)} = 181천원

⑤ 1월 선납 후 5.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171 천원 - { 90 천원(제1기 선납액) $\times \frac{120\text{일}}{181\text{일}}$ } = 111,330원(환부세액)

⑥ 1월 선납 후 10.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 81 천원(차등, 선납 각10% 공제) $\times \frac{92\text{일}}{184\text{일}}$ } = 40,500원(환부세액)

[사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범위

(행자부 세정 13430-505, 2001. 11. 1)

1. 정리대상

도난당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자동차, 양도한 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사실상 미소유·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자동차

- ① 조사일 현재 차령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 ② 자동차세가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한 차량
 -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 차량

※ 위 기준은 정리기간 중 반드시 사실조사 하여 정리하여야 할 대상이며,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권자가 수시조사 하여 사실상 미소유·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면 정리조치

2. 정리방법

-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체납자자료에 의하여 자동차 미소유 사실을 조사(서식 별첨 1)하여 미소유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소멸되어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일 이후 과세 제외(그 후에 회수나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추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미소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사생략 가능
- 미소유 사실은 정리대상 납세의무자 거주지 통·반장 중 1인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하고, 조사공무원이 통·반장에게 직접 확인하여 그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하여도 됨
-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가입여부는 자동차 등록부서 또는 보험회사 등에 조회하여 확인

- 자동차등록말소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고 기존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다른 재산을 대체 압류 하거나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체납액 결손처분

마.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종별구분 및 과세특례(부칙 제5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제164조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① 2000. 1. 1부터 2004. 12. 31까지 : 승합자동차 세액을 적용

②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begin{aligned} & \text{승합자동차 세액} + (\text{승용자동차 세액} - \text{승합자동차 세액}) \times 33\% \\ & = \text{산출세액} \end{aligned}$$

③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begin{aligned} & \text{승합자동차 세액} + (\text{승용자동차 세액} - \text{승합자동차 세액}) \times 66\% \\ & = \text{산출세액} \end{aligned}$$

④ 2007. 1. 1부터 : 승용자동차 세액을 적용

바. 비과세(법 §196의4)

- 국방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경호용 자동차
- 경비용 자동차
- 교통순찰용 자동차
- 소방, 청소, 오물제거용 자동차
- 환자수송용 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한함
- 도로공사용 자동차
- 우편, 전파관리용 표식을 한 자동차
- 주한외국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 사용자자동차
- 등록폐차업소에서 폐차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사례]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비과세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이 파손·노후화 등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폐차입고일』에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날 이후에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1030, 2007. 4. 5)

사. 납세증명서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와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신

고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주행세

가. 의 의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확충과 취약한 지방세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여 신설된 지방소비세

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등)

2) 납세지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시·군별 안분세액을 울산시장이 최종 납입)

다. 과세기준 및 세율(법 §196의17 ①, ②)

- 교통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단,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부과징수(법 §196의18)

1) 신고납부

-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 기한(제조업자 : 익월 말일, 수입업자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함
-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2) 보통징수

-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가산율(1일 10,000분의 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3) 징수세액의 송금 및 안분기준

가) 징수세액의 송금

-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송금해야 함

나) 징수세액의 안분 및 납입

- 울산광역시장은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세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주행세를 매월 25일까지 각 시·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 내역서를 각 시·군에 통보

-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함.

○ 징수세액의 안분기준

-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 세액
(1월~6월 : 전전년도 결산세액, 7월~12월 : 직전년도 결산세액)
- 시·군별 세액배분 방법

$\frac{\text{당해월 주행세 징수총액} \times \text{당해 시·군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 징수세액}}{\text{전국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 징수세액의 합계}}$

4) 이의신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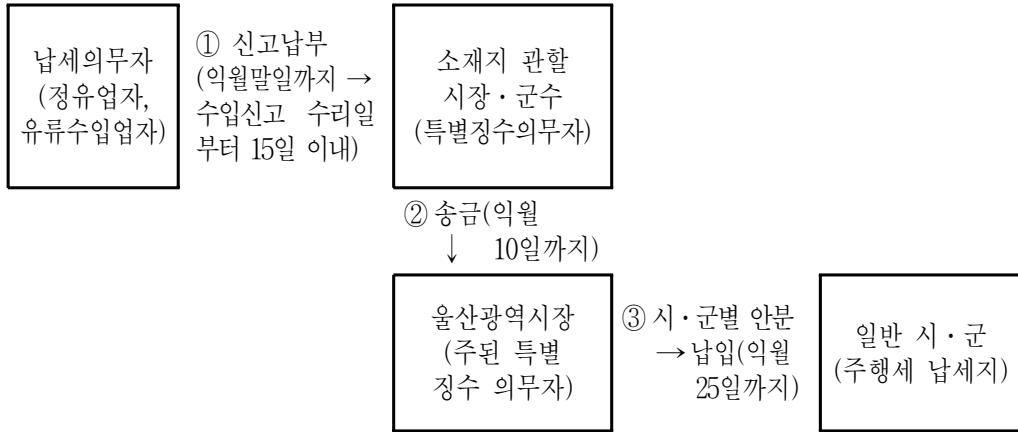
가) 이의 신청

- 주행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 196조의 18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간주

나) 과오납금의 환부

- 주행세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 시·군에 납입해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주행세 납부 및 배분절차 도해〉



5) 교통세법의 준용

- 주행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 이 경우 주행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본다.

6) 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 주행세의 사무처리비는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 제146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영 제146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영 제146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안분내역서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제4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 146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text{억원}/12) \times$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text{억원}/12)$ 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6) 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농업소득세

-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적용 시기는 2004년도 귀속분 농업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2005년도에 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2004년도 귀속농업소득세부터 적용이 5년간 중단된다.

13. 담배소비세

가. 과세대상(법 §224)

- 흡연용 담배

- 제1종 껴런
- 제2종 파이프담배
- 제3종 엽껴런
- 제4종 각껴런
- 껴는 담배
- 껴새 껴는 담배

나. 껴세의무자(법§225)

- 제조자 : 제조장으로부터 껴출시 껴세의무를 껴다.
- 수입껴매업자 : 보세구역으로부터 껴출 시 껴세의무를 껴다.
- 입껴자 : 휴대껴 등으로 제조담배 껴입 시 껴세의무를 껴다.
- 껴타 : 담배제조 껴 껴입자
- ※ 껴세담배를 껴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껴도·껴매·소비 껴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껴지 제4항의 껴정에 불껴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껴세의무자로 껴다.

다. 껴세지(법 §227)

- 제조장으로부터 껴출된 담배 껴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껴출한 담배 : 담배가 껴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껴할 시·껴
- 입껴자의 휴대껴 등 : 세껴 소재지 껴할 시·껴
- 껴타의 껴우
 - 담배제조 시 : 제조장 껴할 시·껴
 - 껴껴껴입 시 : 껴입 장소 껴할 시·껴

라. 과세표준 및 세율

1) 흡연용의 담배

- 제1종 쫄면 : 20개비당 641원
- 제2종 파이프 담배 : 50g당 1,150원
- 제3종 엽쫄면 : 50g 3,270원
- 제4종 각면 : 50g당 1,150원

2) 씹는 담배 : 50g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 50g당 820원

4) 영세율 적용대상(영 §173②)

- 쫄면 : 100원(200개비당)
- 각면 : 100원(50g당)

마. 과세 면제(법 §232)

- 수출
- 국군·전경 등에의 납품
-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판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여객선 승객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및 연구용
-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제조담배
- 해외취업 근로자,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 입원주인 상이군경 등에 공급하는 제조담배
- 주한 외국군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 외국으로부터 입국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의 면세 범위

담 배 종 류	수 량
· 쉐럴런	200개비
· 엽쉐럴런	50개비
· 기타 담배	250그램

바. 비과세 대상(법 §231)

- 담배의 공급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 수출한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4. 6. 24 위헌)에 따라 면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가산세를 현재는 납세의무자인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추징하나 면세된 담배소비세의 가산세를 처분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14. 도축세

가. 과세대상

소·돼지의 도살행위(닭, 염소, 개의 도살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가 없음)

나. 납세의무자(법 §234)

소·돼지의 도살자

※ 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 경영자

다. 과세표준

소·돼지의 시가(매년 1. 1, 7. 1 기준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결정)

라. 세 율

소·돼지 결정가격의 1%(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이하 조정가능)

마. 부과징수(법 §234의3, 234의4)

- 납세지 : 도축장 소재지 관할 시·군
- 납기 : 매월 분을 익월 5일까지 납입
- 징수방법 : 특별징수(도축장 경영자)
 - ※ 장부 비치, 기재하고 2년간 보관
- 영수증 교부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부분은 2년간 보관
- 부당신고 시 : 10% 가산세 적용
- 면세규정의 배제 :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서 비과세. 면세규정이 없다.

15. 도시계획세

가. 과세대상

1) 대상지역 및 물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부과구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함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가) 토 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다만, 지상정착물(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은 제외), 기타 이용시설 등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 ※ 환지처분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포함

나) 주택, 건축물

- 재산세 과세대상 중 당해연도 철거명령을 받은 부분
- 개발제한 구역 내의 주택. 다만, 별장·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 됨

나. 납세의무자(법 §235의2)

과세대상 지역 내에 있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

다. 세 율(법 §237)

- 표준세율 : 1,000분의 1.5
- 제한세율 : 1,000분의 2.3

라. 과세기준일 및 납기

구 분	과 세 기 준 일	납 기
건축물, 주택	6월 1일	7. 16 ~ 7. 31
토지, 주택	6월 1일	9. 16 ~ 9. 30

마. 부과징수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재산세와 동일)
- 고 지 :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동시부과 및 징수
- 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세부담 50% 이상 상승 시 50%범위 내에서 세부담 적용

16. 사업소세

가. 과세대상

- 사업소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수행되어야 함
- 재산할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여야 함
- 종업원할은 종업원의 수가 50인을 초과하여야 함

나. 재산할 사업소세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
- 제2차 납세의무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

2) 과세표준

- 사업소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의 개념은 취득세편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동일

-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면적
시설물만 있는 경우 그 시설물과 기계장치의 수평투영 면적
- 과세 제외되는 건물의 면적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휴식실, 병기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 적용방법
 - 납세의무의 발생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과세기준일 직전·직후의 사용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 1개 사업소의 구내의 수 개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동 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 1㎡미만의 단수는 절사
 - 2개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함

3)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당 500원

4) 부과징수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납기 : 매년 7월 1일~7월 31일
- 징수방법
 - 납세의무자가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 미납부나 부족납부 시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가산율(1일 10,000분의 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과세권자가 수시부과

○ 신고의무 등

- 납세의무자가 아래 사항을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축을 증축 또는 개축 시
-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비과세대상건물이 과세대상건물이 되거나, 과세대상건물이 비과세 대상건물이 된 때
- 건물의 소유자 또는 명칭이 변경된 때
- 납세의무자가 상기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 가능

5) 면세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m²이하

[판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

①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기계장치와 수조, 저유조,사이로, 저장조라는 저장시설을 동등하게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동가능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건축업계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을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

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기계장치의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 사회 통념에 더 부합하는 점, ③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기계장치가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구적도상의 면적과 작업반경범위 내의 면적 전체를 포함시킬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설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사업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7두3596, 2007. 4. 12 및 광주고등법원 2007. 1. 11선고 2006누1325 판결)

- 이 판례는 재산할 사업소의 경우 이동하는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심사결정이나 유권해석은 구적도상의 면적으로 이동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이 판례에 의거 일정 시점에서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된 것임

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1)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주가 아닌 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음
(타사업소에서 지급받는 강사료, 사례금등)

2)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종업원의 범위에는 사업소에 근무

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

- 월급여총액은 당해 월에 지급하여야 할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3) 세 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음

4) 납세의무자

- 납세지 :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납기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징수방법
 - 납세의무자가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 미납부나 부족납부 시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가산율(1일 10,000분의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으로 과세권자가 수시부과
- 다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세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5) 면세점 : 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

$$\text{※ 종업원 수} = \text{월 통상인원} = \text{월 상시인원} + \frac{\text{수시고용 연인원}}{\text{당월의 일수}}$$

- ※ 월통상 인원의 판단은 당해 월의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급여 미지급 비상근 임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요령

○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임원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할 과세표준 및 사업소세 면세점 적용 시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006.4.14. 이후 신고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부터 적용.

※ 관련 참고 판례(2006두514, 2006.4.14)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중 급여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 등과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함 (행자부 세정-1111, 2006. 8.11)

[사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1두731, 2002.9.12.) 월 통상 종업원수가 50.4인 경우는 5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세 면세점을 적용할 수 없음(행자부 세정-2311, 2006. 6.8)

[사례] 종업원의 범위 적용 근거 규정

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소세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업원 규정을 사업소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행자부 세정-4959, 2006. 10. 12)

제3장 과세면제 및 세액경감

제1절 의 의

지방세에 있어서도 조세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박탈하는 비과세제도와 법률이 일반적으로 당해 과세객체를 과세대상으로 선택해서 이에 과세하는 것으로 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감면 또는 불균일과세 등이 있으며 또한 영세부담의 배제라는 이유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과세 제외를 하는 면세점 제도와 징세비의 절감이라는 이유에서 설정된 소액 부정수제도가 있다.

그런데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면세점, 소액부징수가 있으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감면,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외자도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세감면 규제법에 열거된 법령이외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면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1.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제외 또는 과세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비과세는 지방세 법규 자체에서 당해 재산을 과세객체의 선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당해 대상을 일반적으로 과세객체로 선택하여 이것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확정 또는 이행에 있어서 지방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지방세채무의 면제와는 그 전체를 달리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것으로서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과세기술과 입법정책에 따라 해결할 과제에 불과하다.

2. 면 제

면제라 함은 법령에 의해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면제조치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멸한다. 그런데 비과세는 법률이 당해 대상을 과세물건의 선택에서 제외하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면제는 법률이 일반적으로 당해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선택해서 이에 과세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면제는 엄격히 말해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 조치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 법률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 면제가 가능한 것이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는 면제할 수 없는 것이다.

감면이라 함은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후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다거나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공익상 사유나 산업경제 내지 보건위생 기타 사유 등으로 지방세를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일률적인 과세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주민의 수익 정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균일과세 즉, 차등과세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이 미치는 범위가 일부에 국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면세점

면세점이라 함은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객체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면세점은 영세부담 내지 대중부담의 배제 및 징세비의 과다, 과세사무의 번잡 등 과세기술상의 이유에서 설정된 것이다.

4.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라 하는 것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면세점제도가 징세비의 절약 외에 영세부담의 배제라는 이유에서 설치되었는데 비하여 소액부징수는 전적으로 징세비의 절감이라는 이유에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면세점은 과세 제외되는 한계를 주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소액부징수는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5.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규정과 조건부 비과세·감면

지방세법령, 시·도 및 시·군·구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재평가법, 국세징수법령 등에서 특정의 정책목적 수행 등을 위하여 지방세를 비과

세·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과세·감면만 규정하고 사후 추정규정이 없는 경우와 사후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후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는 실익은 추정규정이 없을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추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① 비과세·감면 추정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경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정 단서조항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추징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사유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그 밖의 중과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② 비과세·감면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조건부 과세권유보)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정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서 『제1항은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하되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며,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 당초의 감면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정하게 되는 사유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그 밖의 중과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제2절 지방세 감면의 기초

1. 비영리사업자와 사용의 범위

비영리법인 등이 직접 취득한 부동산 등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종사자로 하여금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종교단체 등의 종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바, 어느 종사자까지 사용하여야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사용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하여 관건이 된다.

그럼, 첫째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장과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1구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어느 범위까지 떨어져 있어야 이를 인정할 것인가?

①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그 종사자가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 내 성직자 사택을 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사례] 동일 구내의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판단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지 내에 있는 성직자 및 관리 직원의 주거용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등이 비과세 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 863, 1996. 7. 24)

[사례] 동일 구내의 공장의 기숙사에 대한 감면 판단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용 부동산이 지번에 관계없이 1구내(경계구역 내)라면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어 감면대상에 해당함(내무부 세정 13407- 851, 1996. 7. 23)

②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면서 종사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당해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1구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근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인정한 사례]

①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판92누7351, 1992. 9. 22.)

②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 취득하는 학교기숙사는 위치가 학교구내·외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내무부 도세13421- 130, 1993. 2. 23)

- ③ 장학업무와 학술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학교구내에 위치한 해외유학생 및 대학원생 기숙사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임 (행자부 세정13407-909, 2000. 7. 14.)

[인근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부정한 사례]

- ①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공원자원의 보호, 국립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공원자원의 보호나 국립공원시설의 관리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이 건 부동산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17km나 떨어진 ○○읍내에 위치한 직원숙소용 아파트의 경우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행자부 심사2000-181, 2000. 3. 29)
- ②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m떨어진 농협직원의 주차장은 당해 농업협동조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668, 2000. 5. 24)

2. 주된 사업과 감면법인의 판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사업을 살펴보아서 그 법인이나 단체가 1가지의 비영리사업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업은 비영리사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것인가? 통상 법인이나 단체는 1가지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대

개 여러 개의 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해당여부를 『주된 사업성』으로 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주된 사업의 여부는 사업 내용을 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보조적인 사업이 비영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술진흥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실무적으로 비영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술진흥사업 등을 『주된 사업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인허가를 한 주무부 장관의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주무부 장관이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비영리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인 등의 비영리성을 세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서, 정관 목적사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영리목적 등에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례] 학술연구단체의 범위 판단

학술 또는 기술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 당해 단체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 안됨(행자부 세정13407-599, 1999. 5. 18)

3. 목적사업과 후생복리사업과의 관계

법인의 목적사업에 구성원의 후생복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후생복리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후생복리 목적으로 예식장업, 목욕탕업, 주유소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데는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동산인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수익금과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여부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후생목적사업과 목적사업의 범위

‘신협’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요금 및 이용실태, 유사 목욕탕의 요금으로 보아 ‘영리목적’ 이어서 고유목적사업용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 안 됨(감심2000-64, 2000. 5. 2)

[사례] 후생복리사업과 직접사용 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이 사무실 등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 사업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 의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행자부 세정 13407-1214, 2000. 10. 18)

- 후생복리사업에 사용여부의 판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라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사례] 구성원의 후생복지사업의 범위 판단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용객 대부분이 준조합원이고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까지 준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요금도 인근예식장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으로 보는 경우 일반인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행심2000-623, 2000. 8. 29.)

[사례] 채권보전용 부동산과 목적사업에 사용 판단

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신용사업 등 그 자체에 직접 사용위한 것이 아니고, 매각하여 미회수 채권 충당목적이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위해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 면제 안됨(행자부 심사99-183, 1999. 3. 31)

4. 직접 사용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면 첫째, 임대용 부동산은 소유주인 당해 법인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둘째,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유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지방세법상에서 『직접사용』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 종교, 제사 등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유 주체가 직접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의 해석 규정이 없으나, 비영리사업자나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거나 중과세하는 데 여기서 그와 같은 과세 처분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에 해당한다.

[판례]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94누224, 1994. 10. 28.)

5. 감면의 대상범위

비과세·감면대상법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감면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재산』 이라고 할 경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저당권, 전세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부동산』 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기타의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 유치원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동산을 그 설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임.(행자부 세정13407- 555. 1997. 6. 3)

[사례] 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범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나, 교회 공원묘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 아628, 1998. 10. 8)

제3절 지방세법상의 감면 내용

1. 농어민 지원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법 §261)

1) 농지구입 시 감면 :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 대상자 :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 계열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 농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

-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결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 일정규모기준의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단, 임야를 취득하여 2년 이내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

[일정기준의 범위]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또는 그 지역과 연결한 구·시·군 지역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일 것
-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 답, 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 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례] 미지정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경감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어떠한 용도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인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범위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2285, 2007.11.16. 참조).(행자부 세정-5117, 2007. 11. 30)

2)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등 취득 시 감면 :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가)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

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다)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3) 농기계류 등 보유 시 감면 :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면제

가) 주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의 취득 :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

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취득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나.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취득세와 등록세 100% 면제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2) 농어촌정비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 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

-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가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 4)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농지의 취득(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다. 영농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감면(법 §264)

- 1) 농협 등 담보물 등기 : 등록세 100% 면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농촌계를 포함),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 등록세 면제. (단, 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 한정.)

- 2) 농어촌기반공사 등 담보물 등기 : 등록세 100% 면제

가) 농어촌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기반공사가 농민(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나)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

다) 농업기반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사례] 담보물등기와 면제범위

- ① 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이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위탁영농회사」는 「농어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 ②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때의 담보물에 관한 등기라 함은 지상권 설정등기도 포함되는 것임.

라.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법 §265)

1) 농촌공가에 대한 재산세 면제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마.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법 §266)

1)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취득 부동산

- 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인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 과세표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
-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2)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동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가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 농업기반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3) 구관사업 등에 공여되는 부동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4) 회원사업 등에 공여되는 부동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협동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및 신용사업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미사용, 매각, 다른 용도 사용 시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
 3. 산림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정한 사업

5)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바.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법 §267)

1) 어선 등 취득 시 :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

- 대상자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 일정규모의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

-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을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일정기준의 범위]

-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 (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 일 것과
- 어선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어장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르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 취득세 면제

3)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 사업소세 면제(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는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제외)

사. 농업법인 등의 감면

- 농업법인 등이 고유 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면제 및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법 §268)

-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정)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자동차(자동차매매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제시된 중고자동차에 한정) 제시 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나.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법 §269)

-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소규모주택의 범위]

-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

[일정기간의 범위]

-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4년 이내
-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동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

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례] 주택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1994.12.22.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대한주택공사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94.12.22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 및 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법이 개정(97.8.22)되어 「대지의 조성 및 공급」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제5호에서 제4호로 내용 변경없이 호수만 변경된 경우라면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공급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부동산 공급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대로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228, 2007. 4. 17)

-입법상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에는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의 도시가스업에 대한 감면

- 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라.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한 감면

- 1)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오염방제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오염방제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마.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종합에너지회관용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제10호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바.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가 동법 제70조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내지 제9호 또는 제83조의18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 제5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법 §270)

-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과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

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아.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법 §271)

- 1)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 :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단,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함.)

자. 신문·방송업 등에 대한 감면

-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신문, 방송 및 통신업 : 사업소세의 100분의 50 경감

차.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법 §273)

-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등의 국민연금관리업무(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4)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의료보험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5)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6)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7)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 영유아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침] 영·유아 보육시설의 감면 적용 요령(행자부 세정-311, 2005. 1. 18)

종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비과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조항(제272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나 신설된 감면조항을 운영함에 있어 취득자가 누구이든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설치·운영하기만 하면 면제라는 해석이 가능하나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도 취득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비과세 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 후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직접 설치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수입자에게까지 면제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이 초래될 뿐 아니라 개정 입법취지나 취득세 법리에 어긋나므로 취득자가 직접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규정과 시도세 감면조례(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감면함

[사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적용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 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사실상 운영자가 부동산의 소유주인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행자부 세정-3954, 2005. 11. 23)

- 영·유아 보육시설을 취득자와 운영자가 상이한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은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재산세는 당해 건물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0)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법 제273조의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분	'04년	'05년		'06. 1.1 ~ 8.31		'06.9.1 이후	
		주택	주택외	주택	주택외	주택	주택외
개인 - 개인	5.0%	3.5%	3.5%	2.5%	4.0%	2.0%	4.0%
개인 - 법인 (법인 - 법인)	5.0%	4.0%	4.0%	4.0%	4.0%	2.0%	4.0%

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가.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취득세, 등록세 면제(법 §27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등록세 면제

나. 대도시외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 : 취득세, 등록세 면제

1) 요 건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이전공장의 범위

-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 및 비도시형공장 포함)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

3) 이전공장의 요건

- 가)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나)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 다)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 라)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면범위 :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 범위 내

-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 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가) 이전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률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나)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가액의 차액

※ 양도가액을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

5) 초과부동산의 과세방법 :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함.

6) 감면신청 : 별지 제51호의2 서식을 사용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법 §276)

1) 감면대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감면세액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3) 추정사유

-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라.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법 §277)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마.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추징

바.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법 §278)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감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2) 노동조합의 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3)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의 감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및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주장한다.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

5)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법 §280)

1)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3)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 및 제188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중과세 세율 적용 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함

4)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5) 유통단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자.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법 §281)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특별시·광역시안의 가스관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법 §28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

발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사례]

- 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자동차제조 과정상 필요한 자동차 성능, 제동력, 주행시험용에 사용되는 시설물은 기업 연구소용의 부동산에 해당됨.
- ② 법 제282조 단서에서 규정한 『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함.
- ③ 영 제228조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사용하여야 된다는 의미임.

카.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법 §283)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건설업자”라 한다)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 및 통신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타.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법 §284)

-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항운송용 선박(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법 §285)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법 §268의2)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거. 실험연구용 자동차 수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

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

4.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가.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법 §286)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한국자원재생공사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1.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해양오염방제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과 해양오염방제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1.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
2.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라.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의 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마.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바. 사회단체에 대한 감면

다음의 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사. 학술연구단체등 에 대한 감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자.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차.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카.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파.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5.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장·궤도부설전진기지 및 송전선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마. 택지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사.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6. 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또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치성재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7. 감면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처리)

토지분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제4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채납처분)

제1절 의 의

채납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채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대판] 위법한 부과처분에 대한 채납처분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채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 한 채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채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대판 87누383, 1987. 9. 22)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대판 87누1009, 1988. 6. 28)

제2절 압류의 내용

1. 요 건

- 독촉,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받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수시부과의 경우 담보제공요구를 응하지 아니한 때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압류의 제한과 금지

가. 압류의 제한

- 독촉을 한 체납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를 한 경우(국징법 §19③). 단, 교부청구는 가능하다.
- 독촉을 한 지방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정지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그러나 지방세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국기법 §57, 행소법 §23ⓧ)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불복신청에 대하여도 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음(국징법 §61②).
-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를 한 경우
-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취급되는 지방세채권에 있어서는 회사정

리법 제6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새로 압류할 수 없음.

나. 압류의 금지

1) 초과압류의 금지(국징법 §33의2)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2) 무익한 압류의 금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상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국징법 §85①)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상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국징법 §85②)

3) 법정압류금지 물건

납세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안녕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을 위한 재산,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상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함

다. 압류대상재산

1)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 압류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 동산 및 유가증권 : 채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로 채납자일 것
-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로 채납자일 것
-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채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로 채납자일 것
- 유한회사 사원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로 채납자일 것
-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해 채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대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효과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83누506, 1984. 2. 24)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대판 83누527, 1984. 1. 24)

2) 국세징수법 시행지역 내에 있는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 국세징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그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3)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함.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취업을 하지 않는 것)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4)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재산이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없는 것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즉 채권 이외의 재산은 매각방법에 의하여 환가하는 것이므로 양도성이 없는 것은 매각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으로 될 수 없고, 채권은 채권자에 대위해서 추심하여 조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압류대상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유의사항]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환가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 보관 또는 운반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 채납자의 생활유지 또는 사업에 지장이 적은 재산이어야 한다.
-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 채권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어야 한다.

제3절 압류의 절차

1. 신분증의 제시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소속, 직위, 성명과 생년월일,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국징법 §25)

2. 수색의 권한과 방법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 또는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강제수색을 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음(국징법 §26)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함. 다만, 해가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음

[해가 진 이후에도 영업시간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는 장소]

-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나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부로 하여금 객을 유희하게 하는 영업
- 무도장을 설치하여 공중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 주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수색을 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와 다음에 설명하는 체납처분 현장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등본은 수색을 받은 납세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체납처분현장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국징법 §26②, 동령 §34).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한 경우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한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수색한 일시, 수색한 재산 또는 가옥 기타의 장소의 표시

3. 질문, 검사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의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인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국징법 §27)

여기에서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의 법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을 말함

4. 출입제한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수색을 할 때, 질문·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 중 장소에 있는 관

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국징법시행령 §33)

5. 참여자설정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 동거인,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 중 1인 이상을 증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함(국징법 §28)

6. 압류조서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채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압류연월일, 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채납처분 현장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함(국징법 §29, 동시행령 §35)

채납자의 재산 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등본을 채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등본을 교부하여야 함(국징법 §28, 동시행령 §35)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함 (국징법시행령 §35①)

7.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법원판결문 등)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국징법 §50)

위에서와 같은 소유권의 주장 및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청구이유가 정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징법시행령 §55)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청구이유부당통지를 받고도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방세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국징법시행령 §55)

[대판]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경우의 효력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체납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 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대판 76다297, 1997. 4. 28)

8. 압류금지 재산

압류금지의 취지는 납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압류를 금지하거나 조건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9.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정법 §31)

다음의 재산은 납세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압류금지됨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실인(實印)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 상 필요한 서적·기구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판례] 유류조보금에 대한 압류가능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고 그 목적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재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 보조금지급청구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1303 결정 참조)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은 항고인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유류 보조금 및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청구 채권 내지 인천광역시가 위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원인으로 항고인인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출금청구권이므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집행채권에 유류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집행채권에 대여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집행 채권에 기한 이 시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바로 부합하는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마1367, 2007. 2. 7)

10.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징법 §32)

다음의 재산은 채납자가 조세채권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 비료
-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가. 급여의 압류제한(국징법 §33)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1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지침] 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행자부 세정-2612, 2006. 6.26)

(1) 급여의 범위

- 급여·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댓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함
-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함

(2) 월 급여총액

-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월급여총액 : 근로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퇴직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예시> 월급여 액이 400만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 4만원인 경우 압류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월급여 총액의 범위는?
 ⇒ 400만원 - (40만원 + 4만원) = 356만원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

- 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
 - ②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230만원인 경우

$$= 230\text{만원} - 120\text{만원} = 110\text{만원}$$
 압류가능,
 - ③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400만원인 경우

$$= 400\text{만원} / 2 = 200\text{만원}$$
 압류가능
 - ④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700만원인 경우

$$= 700\text{만원} - \{300\text{만원} + [(700\text{만원}/2) - 300\text{만원}]/2\} = 375\text{만원}$$
-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예)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됨

[공식] 월 급여 총액별 압류 가능 범위

월 급여 총액	급여 압류 범위
월 12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0원)
월 120만원~초과~240만원 이하	월급여 - 120만원
월 24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월급여 ÷ 2
월 600만원 초과	$\text{월급여} - \{300\text{만원} + [(\text{월급여}/2) - 300\text{만원}]/2\}$ $= (\text{월급여} \times 3/4) - 150\text{만원}$

<금액별 압류 가능액 예시>

금 여 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4) 시행시기 : 2006. 4. 28

제4절 압류 물건별 처리방법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가.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채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압류한 재산을 채납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채납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된 유가증권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등의 압류

가. 압류절차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그 변경등기 또는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구분 및 분할·합병 등 대위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등록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서 그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나. 압류의 효력

부동산 등(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지방세가 체납된 것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국세징수법 §4)

[대판] 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88누12080, 1989. 6. 13)

다. 압류통지

-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납자에게 통지
- 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
-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 즉,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자·질권자·전세권자가 압류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

채납자 또는 채납자의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압류재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유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수 없음.

마. 제3자의 소유권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5일전 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함. 이때에는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소유권의

반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그 압류해제를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청구인이 소유권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납세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

3. 채권의 압류

가. 압류절차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에게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함.

즉,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함.

나. 채권압류범위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압류할 채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음.

계속 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채권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침. 즉, 이 경우의 압류는 지급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2분의 1로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충당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침.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함.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가. 무체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의 압류절차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51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에 관한 등록을 촉탁하여야 함.

예를 들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체비지를 압류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서울특별시 장에게 그 매수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재산권을 압류 촉탁하는 것임

5. 압류의 효력

가. 일반적 효력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의 처분은 조세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라든가 사용·수익을 가지고 조세채권자(과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압류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함.

압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됨.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는 때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함.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세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함

[대판]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무효청구 적격성

조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대판 91누6023, 1992.3.31)

나. 개별적 효력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 기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질권자가 그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서로서 그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질물을 압류할 수 있음

채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집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압류를 해제한 때 도 같음.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다. 압류해제의 요건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자가 채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라. 일부해제의 요건

-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채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 압류에 관계되는 채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 채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마. 압류해제의 절차

-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함
-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도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그 재산을 인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6. 교부청구

가. 의 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재

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말함(국징법 제56조).

나. 교부청구의 요건 및 대상

1) 요 건

-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에 계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압류관서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함(국징법 §56).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2) 대 상

체납자의 체납된 지방세액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조세액도 포함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국세
- 납세보증인의 지방세, 국세
- 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국세
- 징수유예한 지방세, 국세

3) 교부청구의 절차

가) 교부청구서의 송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함.

나) 교부청구의 상대방과 시기

- 시기 : 체납처분공매집행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금전채권은 추심 일까지
- 공매집행기관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경매기일의 종료 시까지
- 집달관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경락기일까지
- 집행법원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전부명령(추심명령)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 집행법원
- 파산절차인 경우 파산종결의 결정시까지 파산관재인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최고기한까지 청산인

4) 교부청구의 효력

가) 배당청구의 효력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환가대금 중에서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이 있음.

나) 시효중단의 효력

교부청구는 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의 징수 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강제 환가절차이므로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정법 §28).

5) 교부청구의 해제

압류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한 후에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함(국징법 §60).

7. 참가압류

가. 의 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함(국징법 §57).

나.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야 함.

2) 절 차

- 기압류기관에의 참가압류통지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압류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국징법 §57①).
-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징법 §57②).

○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참가압류 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국징법 §57③).

다. 참가압류의 효력

1) 교부청구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즉, 배당요구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2) 기압류의 해제, 취소 시 압류효력의 소급(국징법 §58)

다른 기관이 한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름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압류 기관에 송달된 때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3) 기압류를 한 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음 (국징법 §58③)

라.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의 절차

1) 압류해제의 통지(국징법 §58②)

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문서로 참가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2) 동산, 유가증권 등의 인도(국징법 §58②)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 시에 그 압류해제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인도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직접 인도하여야함

3) 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통지

동산, 유가증권을 인수받은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국징법시행령 §65④).

마. 참가압류의 해제(국징법 §59)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일반의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참가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등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 취소 등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이동

1)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같은 점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짐

2)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다른 점

○ 효력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상실하게 되나,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 등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 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요건면에서의 차이점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기간중이라도 가능함.

○ 절차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하여야 함.

8. 압류재산의 매각

가. 매각의 의의

조세채권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충족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하는데 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매각이라 한다.

나. 성 질

매각처분은 압류에 의한 압류재산의 처분권(자력집행권)의 행사로서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임.

행정처분으로서의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로 그 권리의 이전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여 승계취득이 됨.

1) 지방자치단체와 채납자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매각처분은 채납자가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고 매각재산에 대한 채납자의 권리는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환매대금을 채납액에 직접 충당함

2) 지방자치단체와 매수인과의 관계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이전 절차를 밟게 하거나 채납자에게 대위하여 그 절차를 밟는 외에 매각재산에 대한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을 진다. 그리고 매수인은 권리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함.

3) 채납자와 매수인과의 관계

채납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의무를 지는 외에 그 재산에 대하여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을 진다. 그리고 매수인은 채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 취득함.

4) 매각의 방법

매각의 방법에는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매가 원칙임.

5) 공 매

가) 의 의

압류재산 매각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함.

나) 공매기관

공매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봄.

다) 공매장소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에서 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공매대행 의뢰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할 수 있음.(국징법 §64)

6) 수의계약

가) 의 의

수의계약이란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특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것. 즉,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인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함.

나) 매각요건(국징법 §62)

-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격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생육, 생선, 야채류)

-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주세법에 의한 추정, 마약법에 의한 마약, 총포화약류에 의한 총포, 화약류, 홍삼전매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담배전매법에 의한 입담배)
-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다) 매각절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매각 5일전까지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함.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매각예정가격(추산가격)의 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함.

다만,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공매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정법시행령 §69)

7) 공매의 절차

가)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매각예정가격이란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매각예정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

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음.(국정법시행령 §63②)

나) 공매공고

-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적절한 장소에서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고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공고할 수 있음(국정법 §67③)
- 공매공고의 목적은 공매재산의 수요를 환기시켜 고가의 유리한 매수신청을 유인하는 데 있으며 공매공고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공매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므로 공매공고는 준법률적인 행정행위임(국정법 §69)
-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 재 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할 수 있음.

[공매공고내용]

- 납세자의 성명과 장소 또는 거소
- 공매재산의 명칭, 주소지,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 ※ 기타 중요한 사항 :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 공매재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의 가격, 기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 등,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개찰의 장소와 일시, 보증금을 받을 때는 그 금액,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 지적, 건물의 구조 또는 건평이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상이할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함(국정법시행령 §73)

다) 공매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에 계기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징법 §68)

- 체납자
- 납세담보물인 때에는 그 소유자
- 공매되는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자, 가등기권자, 입주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 및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입찰과 개찰]

- 입찰 : 입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수 청약자에게 각자 주소, 거소, 성명, 매수재산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찰로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매수희망자가 자기의 매수신청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봉함하여 세무공무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국징법 §73)
- 개찰 : 개찰은 입찰이 전부 완료한 후 입찰자들이 면전에서 세무공무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이를 공개하여 행하는 바, 입찰자가 제출한 각 입찰서에 의하여 입찰자의 성명, 매수희망재산,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등 기재사항을 일일이 불러서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함.(국징법 §73②)

라) 낙찰과 재입찰

- 낙찰자 결정
공매를 입찰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

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국경법 §73)

- 개찰결과 입찰자가 단일인으로서 그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이고 제 조건에 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의 최고입찰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함.(국경법 §73①)
- 재입찰
개찰결과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음.(국경법 §73)

마) 공매보증금

- 공매보증금(계약보증금)의 납부(국경법 §65)
- 입찰보증금은 공매참가자들로부터 금전(금융기관, 우체국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서 각 매수희망자의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 현재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처리
- 공매보증금의 유가증권의 대용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증권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음.(국경법 §65③)
- 대용 유가증권의 평가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가액은 그 납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국경법시행령 §72)
- 공매보증금의 처리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하며(국징법 제65조 제4항), 공매재산의 매수인은 그 납부한 공매보증금을 매수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 공매보증금 반환

국세징수법 제73조 제3항(낙찰자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타의 입찰자가 납부한 것
모든 입찰이 매각예정가격미만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가 납부한 것

8) 재공매

가) 재공매 사유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에 미달할 때 또는 이미 공매한 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관계재산을 재공매에 붙임.(국징법 §74).

나) 재공매 절차

최초 공매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모든 규정(공고 및 송달)을 그대로 준용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매상황 등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공매의 장소, 매각구분 등의 공매조건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재공매의 공매공고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음.(국징법 §74)

다) 매각예정가격의 체감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고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는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9) 공매의 취소와 중지

가) 공매의 취소

공매공고한 후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채권이 소멸(납부충당의 취소 등)됨으로써 공매기일 전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함.(국징법 §69).

나) 공매의 중지

○ 공매가 전면 중지되는 경우

공매개시 전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채권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공매취소공고에 갈음할 수 있음.(국징법 §71).

여기서 『공매개시 전』이라 함은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입찰개시선언을 하고 입찰서를 받기 전을 말하며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경매인의 매수신청을 받기 전을 말함.

○ 공매가 일부 중지되는 경우

여러 가지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서 채납액의 전부에 충당하게 될 때에는 잔여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함.(국징법 §71)

○ 제3자의 납부의 경우

지방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이 경우 납부한 제3자는 압류관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매수인의 제한]

채납자(공매재산의 소유자)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구하고 채납처분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을 매수하지 못함.(국징법 §66).

[매각결정]

○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

압류한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의 결정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내로 지정하여야 함.

매수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국징법 §75)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낙찰가격을 기준 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1,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로 지정

다) 매수대금의 납부

[매수대금의 납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 물건의 매수대금은 해당 본·지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소재지와 압류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지역일 경우 매수자의 편의를 위해 압류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 받은 압류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성업공사(해당 본·지점)에 전화 및 문서 통보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납부의 효과(국정법 §77)]

○ 권리의 취득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매각결정은 채납자와 매수인과의 사이의 매매계약이며 그 권리취득의 관계는 승계취득이 됨.

○ 채납액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채납자로부터 채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봄.(국정법 §77②)

○ 담보물권 등의 소멸

채납처분에 의한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재산상의 담보물권 등의 특정한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취소됨.

[매수대금납부 최고]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매수인이 그 정하여진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최고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최고일로부터 10일 내로 지정하여야 함.(국징법 §76)

[매수대금의 불납효과]

- 매각결정의 취소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를 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등에 귀속함.(국징법 §78②)

-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징법 §78①)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가) 공매대행 근거법령

지방세 등 체납압류재산은 아래의 근거법령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법 제28조 제4항 및 국징법 제61조 제1항)

나) 공매대행의 의뢰절차

- 공매대행 의뢰서 송부

압류관서의 장은 공매대행 의뢰서와 이해관계자 등 명세서를 성업공사에 송부하여야 함.(국징법시행령 §68의2①)

- 대행의뢰사실의 통지(국징법시행령 §68의2②)

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자치단체의 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성업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음.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한하여는 그 제3자에게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국정법시행령 §68의3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국정법시행령 §68의4①).

라) 공매대금의 인계 및 공매수수료

○ 공매대금 등의 인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의 공매대행에 관하여 수령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과 공매대금은 각각 수령 즉시 압류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좌입금 시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공매대행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 청구 및 지급방법

9. 청 산

가. 배분금전의 범위와 방법

1) 압류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

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다음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함.(국징법 §81)

-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인하여 또는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지방세 등에 우선권이 없는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재산압류 통지를 받고 10일 내에 채권행사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재산매각대금의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함.
-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충당함
-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기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이 기타의 채권이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판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과 가치분과의 관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치분이 있다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73다 905 1974. 1. 15)

- 2) 권리이전에 있는 체납자가 매수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분 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함.(국징법 §82)

나. 배분계산의 작성

- 1)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채납세 등을 배분할 때에는 채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금액,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및 채권금액, 배부의 순위 및 금액, 매각대금교부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국징법 §83①, 동령 §80)
- 2) 채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됨.(국징법 §83)

다. 배분시기

- 1) 압류한 금전은 그 압류를 한 날
-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금부를 받은 금전은 그 금부를 받는 날
-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대금을 수령한 날, 다만, 그 매각대금을 분납하게 된 경우 또는 채납자의 여러 가지 압류재산이 수회에 걸쳐 매각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날 또는 최후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에 배분함
- 4)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전은 그 교부를 받은 날

라. 배분금전의 예탁

- 1)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시, 군 금고 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고,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예탁의 사실을 문서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징법 §84①·②, 동령 §81)
- 2)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전기 채권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리함.(국징법 §84③)

마. 지방세 우선의 원칙(법 §31)

1) 원 칙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법 §31①) 여기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이외에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공공조합의 조합비 등에 이에 해당함.

2) 예외 - 다음의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함.(법 §31②)

-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법 §31② 제1호)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법 §31② 제2호)
- 다음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법 §31① 제3호)

※ 당해재산의 범위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한다)(영 §14의4)

[사례] 당해세 우선원칙 적용시기

'1995. 12. 6 개정된 지방세법(제4995호) 제31조 제2항 제3호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그 설정시기가 이 법시행일 이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임.(세정13407-202, 1996.2.22)

3) 법정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 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위의 신고납부 규정과 고지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자의 확정일
- 지방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납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법 §31② 제4호)
- 여기에서 「소액보증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 이하로 하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
-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하여 채권(법 §31② 제5호)
-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이라 함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을 말함.

[판례] 회사정리개시결정 이후 미신고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성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

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다43883, 2007. 9. 6)

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1) 명단공개 대상자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체납정보”)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요건으로는 첫째, 체납자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체납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이더라도 개별 체납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체납자의 체납액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승계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를 체납자에게 부담되어 체납이 된 경우에도 이를 체납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있어야 하므로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으로 심의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역산하여 2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되 체납발생일은 신고납부세목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부과지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1억 원 이상 이어야 한다. 체납액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에 불구하고 전부 포함

하여 1억원 여부를 판단하되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체납액 중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압류 등을 한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체납액은 당연히 포함되나 압류등 채권 확보조치가 없어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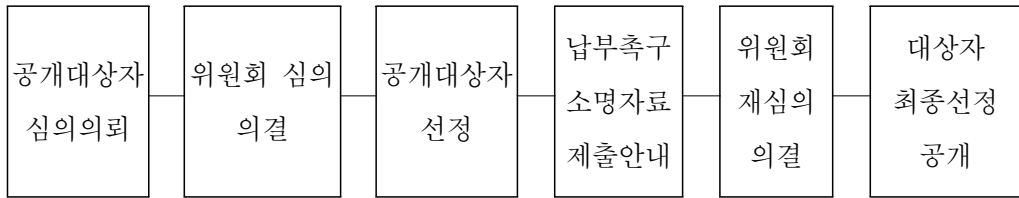
넷째, 지방세 정보공개 대상제외요건이 아니어야 하므로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개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공개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선 공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대상자 요건에 구비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소정의 서식에 의거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공개방법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공개범위

체납자명단 공개 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5)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가) 설치 목적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위원 8명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의 자가 된다.

1. 임명직 :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위촉직 :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②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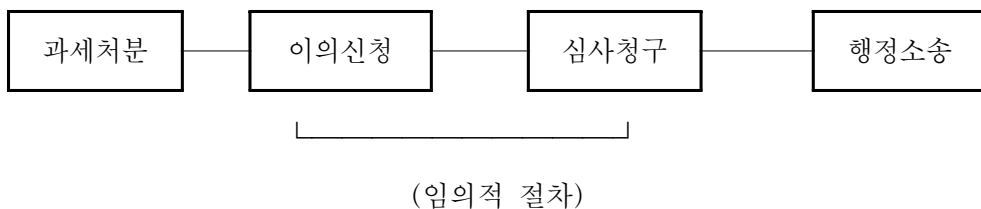
④ 기타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장 지방세 구제제도

제1절 개요

-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2000헌바30, 2001. 6. 28.)에서 지방세법제78조제2항의 위헌결정 함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되 이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심사청구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추후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를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사례]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서식하자와 보정요구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중의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을 때」라 함은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만을 이르는 것

이고 청구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의 미비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사례] 이의신청으로 처리된 신청서도 적법한 이의신청

신청서를 처분기관이나 결정기관이 아무런 보정 지시 없이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였다면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사례] 청구기간 준수여부는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 기준

심사청구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어야만 청구 효과가 있고 청구기간 준수여부도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현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위헌성 판단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마저 위반된다.

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제81조는 동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 제2항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 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제81조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다.(헌법재판소결정2000헌바30, 2001. 6. 28.)

제2절 이의신청(1심)

1. 청구 대상 및 기간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취소변경을 구해하는 제도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법 §73)하는 제1심 구제절차

※ 종전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나 '97년 지방세법 개정시 청구대상에 포함하였음.

2. 신청자

-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법정대리인
- 납세권리자
-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 상속인
- 이의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3. 신청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 도세는 도지사, 시·군세는 시장, 군수
특별·광역시의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구청장
- 불복대상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불복청구가 다른 기관에 신청된 경우
정당한 기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영 §54 ②)
- 신청기간 내에 결정기관이 아닌 처분청 등에 제출된 경우 유효
-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신청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청 가능(법 §75)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결정기간

-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법 §77)
-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신청인에게 통지되지 않을 때 철회된 것으로 간주
- 청구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5. 결 정

- 각하 : 이의신청 또는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기각 :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경정 또는 취소 : 이유 있을 때

6. 결정의 효력

- 처분청을 기속(법 §77② 및 ③)
- 재산은 결정처분 확정 전에는 공매 불가하며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유보 가능(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법 §79)

제3절 심사청구(2심)

1. 청구 대상 및 기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청의 상급 감독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구제제도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제출기관에 제출(법 §74)

이의신청 대상이 되었던 범위에 국한되며 불복한 처분내용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청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2. 제출기관

- 시장, 군수의 과세처분, 이의신청 결정 : 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 : 행자부장관

3.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기간 내에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4. 결정의 효력

- 처분청을 기속(법 §2 및 ③)
- 압류재산을 결정처분 확정 전에는 공매불가하며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까지 공매처분 유보가능(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법 §79))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시장·군수의 부과징수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경유 제출
- 직접 청구 시 감사원 조사청구서를 시·군에 제출 후 1월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증
- 접수기관 처리 : 1월 이내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정조치 후 감사원 송부, 청구자에 통지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변명서, 관계증빙서류 감사원송부
-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5절 행정소송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거나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다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고등법원(1998. 3. 1.부터는 행정법원에서 제1심 심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는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에 의거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가능('1998. 3. 1. 이후)하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세 및 국세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

하여 능률적으로 행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 부담경감도 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방세법 등 각 단행법에서 행정심판(심사청구 등)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예: 지방세법 제78조, 국세기본법 제56조)하고 있다.

1.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불변기간)

2. 피 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소송이 제기되거나 상고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찰로부터의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상급 기관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상급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각급검찰청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지 방 세 실 무

2008년 2월 일 인쇄

2008년 2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

집 필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 기 관 전 동 혼

교 정 : 대전광역시 백만기
대전광역시 송혜숙

인 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생인쇄조합
TEL : (02) 426-4415
FAX : (02) 429-9562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매품>>

2008 공통교재

지방세실무